KIEP는 보호무역주의 대응,
한반도 신경제 지도,
혁신성장·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한
우수한 대안을 제시하여
국가정책에 기여

2018 국가정책 기여 현황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18 국가정책 기여 현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정책대안 제시 및 대안의 정책화 과정, 실적, 효과를 제시하기 위한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국가정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2017~18년 수행한 연구과제 중 2018년도 국가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9개 보고서 및 과제의 주요 정책기여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2018 국가정책
기여 현황

차례

04 요약

08 01 | 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15 02 | 한미 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

21 03 | 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영향에 관한 연구: UNCTAD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27 04 |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32 05 |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

37 06 | 디지털 상거래가 무역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46 07 | 아시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과 협력 방안: 중국, 인도,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55 08 |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 방안 연구

61 09 | 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정책 효과성 연구

요약

KIEP는 보호무역주의 대응, 신북방정책·한반도 신경제 지도, 혁신성장·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한 우수한 대안을 제시하여 정부정책에 기여

보호무역주의 대응

- 산업부 등 관련부처의 대책회의뿐만 아니라 WTO, APEC 등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정부의 WTO 체제 개혁 논의, 한미 FTA 개정 협상, 비관세조치 대응에 직접적으로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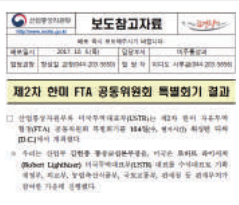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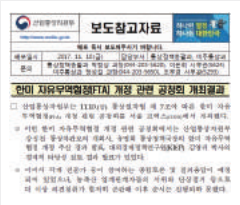

한반도 신경제 지도

- 남북경제 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경제통합모형 구축
- 특히, 남북경협의 경제효과 추정 결과는 대통령 광복절 축사에 인용되어 200건 이상 언론보도가 되면서 남북경협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환기

혁신성장·4차 산업혁명

- APEC과 한중일 FTA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디지털 무역 및 전자상거래 논의를 주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중국, 인도, 싱가포르 등과 혁신협력 강화 및 신남방정책 구현에 일조

국내외 투자

- 외국인투자 유치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하여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등의 정책으로 실현

01 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 「WTO 분쟁해결제도의 개혁(WT/GC/W/752)」에 제안내용 반영
- G20 정상회의 대통령 발언문에 관련 내용이 포함

연구목적	- WTO 체제 개혁을 포함하여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수립 및 제시
정책대안	- 다자통상정책의 새로운 4대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 WTO 체제내 위상 강화, 포용적 무역의 선도, 양자·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 다자통상의 지속가능성 강화 등 - WTO 체제 개혁 논의에 대해 우리나라의 협상전략을 제시: WTO 분쟁해결 관련 상소기구 개편, 개도국 세분화 관련 개도국졸업심사위원회 설치, 복수국간협상 방식 관련 신축적 다자주의 지지 등
정책화 기여	- WTO Public Forum 참석 및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방문('18. 10. 2.~4.) - 「WTO 분쟁해결제도의 개혁(WT/GC/W/752)」에 연구내용이 관철('18. 11. 26.) - G20 정상회의('18. 11. 30.)에서 대통령의 리트리트 발언문에 연구내용이 포함 - 농림부 등 정부부처의 보조사업계획('18. 12. 13.)에서 'WTO 규정과의 합치성 검토' 추가

02 한미 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

- 산업부, 「한미 FTA 발효 5년간 이행상황평가 결과」로 연구내용이 발표되고 한미 FTA 개정 논의에 활용

연구목적	-「통상절차법(제15조)」에 따른 필요성과 미국의 통상압박에 따른 한미 FTA 개정 논의에 따라 한미 FTA 발효후 나타나고 있는 경제적 현상에 대해 종합적·체계적 평가
정책대안	-한미 FTA는 양국간 교역 증대를 통해 경제성장과 후생증가에 이바지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했으며, 국내보완대책은 농수산업 생산증대와 피해감소에 기여
정책화 기여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18. 10. 4.),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17. 11. 10.) 발표자료에 연구결과 활용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제2차 성과평가분과 회의('18. 5. 2.) 안건에 연구내용이 반영

03 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영향에 관한 연구: UNCTAD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 APEC 각료회의 선언문(제20항)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비관세조치 DB 구축에 대한 기반 마련

연구목적	-보호무역의 주요 수단으로 부상한 비관세조치가 교역 및 시장구조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가별 특성에 맞는 정책방안을 도출
정책대안	-국제기준으로 작성된 비관세조치 DB를 중심으로 대외적 대응 강화, 비관세조치 관련 협상에서 논의 활성화 및 협력 강화, 일관성 있는 DB 구축과 지속적인 연구 추진 등을 제안
정책화 기여	-UNCTAD·ERIA 주최 비관세장벽 워크숍('17. 3. 2.-3.), APEC 실무그룹회의('18. 5. 17.) 등에 참석 -APEC 각료회의('18. 11. 15.)에서 정보공유메카니즘을 지지하는 내용이 각료선언문에 포함

04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 대통령 광복절 축사에 연구결과가 인용('남북경협 효과 170조원'을 언급)되고 200건 이상 언론에 보도되면서 남북경협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환기

연구목적	-남북경제 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경제통합모형 구축
정책대안	-남북 경협 재개시 가장 경제 효과가 큰 개성공단사업과 남북 철도·도로연결 사업의 선제적 실행, 향후 경협 사업 추진시 북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제안 -북한이 단순 노동력을 제공하고 현금을 획득하는 기존 남북경협 형태에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
정책화 기여	-대통령 광복절 축사('18. 8. 15.)에 연구결과 인용 -남북경협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

05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

• 통일부 업무보고, '법·제도 정비 등 교류협력 기반 공고화(「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등)'에 제안내용 반영

연구목적	-북한의 무역제도를 국제기준(WTO 규정 체계)에 맞추어 분석하고 남북한 CEPA 체결을 대비하여 북한 무역제도 개선방안을 도출
정책대안	-무역관련 북한의 법·제도의 3단계 개편안 제안, 남북한 CEPA 체결의 교두보 역할 수행 강조 -북한의 원만한 무역관계 유지와 국제 투자유치를 위해 무역·투자 계약의 성실한 이행, 투자로 발생한 이윤의 회수 보장, 상환되지 못한 채무 해결이 필요함을 강조
정책화 기여	-통일부 및 국회 전문가 간담회 및 세미나 참석('18. 6. 25., 7. 4., 9. 18.) -2018 통일부 업무보고, 「교류협력법」 개정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공고화

06 디지털 상거래가 무역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의 디지털 무역 논의와 한중일 FTA 협상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논의에 기여

연구목적	-한국의 디지털 상거래 현황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디지털 상거래가 무역과 고용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
정책대안	-디지털 상거래 수출지원 정책 확대, 관련 통관절차 간소화, 디지털 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한중일 협력 등을 제안
정책화 기여	-산업부, 디지털 통상전략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1차 '18. 4. '19., 2차 5.19.)와 한중일 전자상거래 협력 관련 회의('18. 8. 23., 9. 12.) 등에 참석 -APEC 통상장관회의, 다자무역체제 및 디지털 무역 논의('18. 5. 25.~ 26.) -제14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 개최('18. 12. 6.~7.)

07 아시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과 협력 방안: 중국, 인도,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 한·인도, 한·싱가포르 간 4차 산업혁명 관련 양해각서 체결, 한·중 이노베이션 플라자 개최 등에 기여

연구목적	-중국, 인도, 싱가포르의 4차 산업혁명 추진역량과 각국의 전략, 계획, 국제협력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개발 및 이들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 제시
정책대안	-중국과 경쟁·대응과 함께 선택적·전략적 협력 강화, 인도와 전방위적 융합 및 상생협력 강화, 싱가포르와 4차 산업혁명 정책, 교육 및 R&D, 창업생태계 등에서 혁신협력 강화 등을 제안
정책화 기여	-'중국 지역별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과 한·중 협력' 세미나 개최('18. 10. 30.) -한·인도('18. 11. 30.), 한·싱가포르('18. 7. 12.) 간 4차 산업혁명 관련 양해각서 체결에 기여

08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 방안 연구

• 정부합동,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과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에 반영

연구목적	-기존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글로벌 경제환경과 우리경제의 상황에서 외자유치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연구
정책대안	-투자유치를 위해 현행 조세감면 인센티브와 현금지원제도의 통합운영을 제안 -외국인투자기업에 법인세 감면 폐지 및 현금 지원 확대, 신성장기술 수반기업에 신성장기술 투자 세액공제 확대, U턴·지방이전기업 및 지역특구에 고용 창출·낙후지역 중심 지원을 강조
정책화 기여	-산업부 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개편 관련 회의('18. 4. 2., 4. 11.), 전문가 간담회(5. 23.)에 참석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18. 7. 18.)에서 논의된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과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 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에 연구내용이 반영

09 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정책 효과성 연구

• 산업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의 종합대책」에 제안 내용이 반영

연구목적	-최근 미국, EU, 대만 등을 중심으로 리쇼어링이 진행되는 가운데 리쇼어링의 배경과 가능성 및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 시사점을 제시
정책대안	-리쇼어링 수요조사 실시, 리쇼어링 기업 개념 확대, 맞춤형 리쇼어링 정책 시행, 리쇼어링 기업의 공급망 연결 지원 등을 제안
정책화 기여	-산업부 해외직접투자 전문가 간담회('18. 7. 5.) 및 유턴기업 제도개편 간담회('18. 11. 8.)에 참석 -산업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의 종합대책」('18. 11. 29.)에 연구내용이 반영

01

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김종덕/서진교·박지현·김민성·안덕근

연구목적과 기대효과

| 연구목적 |

▨ **WTO 체제 개혁을 포함하여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수립 및 제시**

- 현 WTO 체제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다자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 정립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선진국 주도 WTO 체제 개혁 논의를 분석하여 다자통상정책 방향 및 WTO 협상 대책 수립에 대한 정책 시사점 도출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감안한 다자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 정립

| 기대효과 |

▨ **한국의 WTO 협상 대책 수립에 직접적으로 기여**

- WTO 개혁에 대한 의제별 대응방안 연구를 통해 협상대책 수립에 직접 기여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다자통상정책 수립에 기여**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감안한 다자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 정립에 필요한 핵심 자료 제공

정책대안 제시

▨ **WTO 체제 개혁 및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다자통상정책의 새로운 4대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안**

가. WTO 체체내 위상 강화

다자통상 전문인력의 확충 및 WTO 사무국 진출 확대
① WTO 파견을 통한 전문인력 배양 및 확충
② WTO 사무국 진출 확대

WTO 주관 사업에 참여 확대
① WTO 공공포럼에 적극 참여
② WTO 교육역량 강화에 참여
③ 개도국 무역지원에 참여 확대

WTO 각료회의 개최

DDA 진전에 기여
① 서비스 시장개방 신방식 제안
② 서비스 세이프가드 제안
③ 지재권 분야 위원회 활용

- WTO 체제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WTO 내부로 진출을 확대(우선 현지 공관에 파견된 공무원 및 연구원 중심, 이후 제도적으로 확대)
- WTO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해 우리의 기여를 확인시키고, WTO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의 저력을 보여 줄 필요
- 특히 교착상태에 빠진 DDA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가져올 새로운 제안을 통해 한국의 기여를 알릴 필요(제안 예: 서비스 시장개방에서 공통의 '모범 시장개방안'을 제시, 지재권에서 기존 각종 위원회를 활용하여 1차 합의를 도출한 다음 상품이사회나 GC에서 회원국 전체의 승인을 얻는 2단계 접근법 등)

나. 포용적 무역의 선도

1)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 확산
2) 비관세장벽 중심의 시장개방을 선도
3) 한국식 양자 및 지역 GSP 프로그램 추진
4) 다자접근을 통한 중소기업의 세계화 지원

- 우리나라가 포용적 무역을 선도하기 위해 무역원활화협정 이행을 확산시키는 데 앞장설 필요가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도국들이 원하는 전자통관 시스템 및 싱글윈도우 등을 컨설팅하는 것이 주효
- 포용적 무역의 핵심은 개도국 및 중소기업의 실질적 시장접근인바, 이를 위해 우리나라 주도로 비관세장벽(NTB) 철폐를 위한 복수국간 협상을 출범시키되, 먼저 NTB를 DB화하고 이에 기초해 공통의 철폐안을 작성함으로써 단계적인 NTB 철폐를 유도
- (최빈)개도국을 2~3개로 분류하여 이들이 희망하는 상품시장개방 및 기술·자금지원 내용을 취합해 이를 부분적·혼합적으로 수용하는 한국식 GSP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시

- 우리 중소기업의 세계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협력진출 및 진출 애로사항을 다자 및 양자차원에서 해결하는 맞춤형 체제(해당기업-KOTRA-해당 대사관)를 구축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해당 관계자에 인센티브 부여

다. 양자 및 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

양자 또는 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를 위해서 먼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추진해 왔던 FTA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의 틀이 필요하다. 관세의 경우 개방 폭이 가장 큰 품목을 기준으로 모든 FTA에서의 해당 상품 관세감축 스케줄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일의 틀을 만들 수 있으며, 기타 관련 제도나 기준 역시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산과 스파게티볼 효과로 양자 FTA의 다자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역 및 메가 FTA를 추구할 수도 있으나 결국 효율성 측면에서 단일의 다자화가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양자 및 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를 추구
- 상품 양허는 FTA별 양허 스케줄 및 수입비중을 감안해 가장 빠른 스케줄로 양허수준을 동일시하여 수입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피해를 최소화
- 규범은 가장 앞선 기준을 중심으로 단계적 단일화를 추구

라. 다자통상의 지속 가능성 강화

1) 환경상품협상(EGA) 재개 및 주도
2) 분쟁해결의 신축적 운영에 기초한 무역과 환경의 조화
3) 신(新) 다자무역규범 추진: 환경보조금의 허용화

- 파리기후협약의 이행 등 이제는 다자무역체제에서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우리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다자통상정책에서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필요
- 먼저 중단된 환경상품협정 재개를 주도하면서 가장 논란이 되는 상품범위는 환경전문 순수과학자들에게 위임해 본래의 취지를 살리되 이를 기초로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
- 아울러 다자무역체제에서도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제제조치를 논의하되 일단 WTO 분쟁해결제도에서 환경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환경을 고려한 신(新) 다자무역협약이 필요
- 대표적인 신(新) 다자협약으로 환경보조금의 허용화가 있으며, 조문화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임시방안으로 각료 결정이나 일반이사회 결정을 통해 환경보조금에 대한 평화조항을 적용(다른 회원국의 제소 가능성을 배제)

▨ WTO 체제 개혁 논의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의 협상대책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1) 기본적으로 적극 지지
2) 단, 통보능력 부족국가에 대한 적절한 고려
3) 역통보 지지
4) 벌칙조항에 대해 강조할 필요는 없음
5) 사후 모니터링 및 통보내용 평가제 도입 등을 제시

-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는 WTO 기능 개선의 대전제이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오히려 적절한 강화를 통해 중국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여 역통보 지지
- 벌칙조항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타협으로 그 수준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나설 필요가 없으나 행정제제의 효과는 강조할 필요
- 전체적으로 통보도 중요하지만 통보된 내용의 평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TPRM과 연계한 철저한 사후 통보내용 평가시스템을 제시

나. WTO 분쟁해결 : 상소기구 개편

1) 우리나라와 직접 이해관계는 없으나 WTO 개혁 차원에서 입장 제시 필요
2) 상소심 90일 시한은 준수하되 당사국과 협의를 통해 연장 가능성을 인정
3) 임기만료 상소위원은 임기중 심리한 사건에 한해 심리 가능
4) 기타 이슈는 미국의 입장을 수용

- WTO 분쟁해결은 WTO 개혁차원에서 접근하되 다른 나라와 함께 공동제안을 하는 것이 적절
- 상소심 심리시한 90일은 준수하되 당사국과 협의를 통해 합의한 경우 연장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임기만료 상소위원 문제도 임기중 심리한 사건에 한해 임기후 서면 심리가 가능하도록 제안
- 기타 의견은 대체로 미국의 불만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입장 정립

다. 개도국 세분화 : 개도국 졸업심사위원회 설치

1) 선진국으로 분류를 최대한 억제 내지 지연
2) 개도국 졸업을 심의·결정할 위원회를 만들어 심사
3) 선발 개도국의 의무수준 확보

- 개도국 세분화가 시작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바, 이를 최대한 억제(필요시 차기 다자협상에서 개도국 우대를 요청하지 않겠다고 자발적 선언)
- 개도국 졸업을 심의·결정할 WTO내 위원회(가칭 개도국 졸업심사위) 설치를 제안, 이 경우 이를 통해 졸업을 심사·결정하므로, 해당 시간만큼 우리나라의 개도국 졸업 지연 가능
- 선발개도국으로 분류될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 수준 의무 확보

라. 복수국간협상 방식 : 신축적 다자주의 지지

1) 개도국의 입장을 고려, 기존 DDA는 일괄타결방식을 지지
2) 선진국 입장을 고려, 새로운 의제에 대해서는 복수국간협상을 지지

- 개도국들이 DDA의 성과와 일괄타결방식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기존 DDA 일부 이슈에 대해서 개도국들이 원하는 일괄타결방식을 지지
- 전자상거래 등 신무역이슈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협상추진 및 조기 성과도출을 위해 선진국이 선호하는 복수국간협상을 지지

대안의 정책화 과정

▨ 산업통상자원부 WTO 협상 대책 논의(2018. 9. 3., 산업부 6층 회의실)

- 산업부 WTO 담당 정경록 과장 주재하 산업부 WTO 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의 협상대책 방향 전달
- 참석자: KIEP 서진교 선임연구위원, 박지현 전문연구원, 김민성 전문연구원 등

▨ 산업통상자원부 WTO 개혁 관련 전문가 회의(2018. 9. 4., 대한상의)

- 산업부 김창규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하 WTO 전문가 간담회에서 연구결과 및 의제별 우리나라의 대응입장을 전달
- 참석자: KIEP 서진교 선임연구위원, 무역협회 박천일 실장, 서울대 안덕근 교수 등

▨ APEC Post 2020 Vision 국제 심포지움에 참가하여 WTO 개혁 논의(2018. 9.19.~20., 중국 하이난)

- 중국 주재 APEC 전문가회의에 참석하여 WTO 개혁 의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발표하고 국제적인 호응을 얻음(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등 참석).
- 참석자: KIEP 서진교 선임연구위원

▨ WTO Public Forum 참석(2018. 10. 2.~3., 제네바 WTO 본부)

- WTO 관계자 및 관련 국제기관(특히 ICTSD)과 WTO 개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전파
- WTO 투명성 제고 필요성은 인정하나, 개도국우대는 그 다양성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려우며, WTO 분쟁해결은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안임을 전달
- 참석자: KIEP 서진교 선임연구위원 등

▨ 주제네바 한국대표부에서 WTO 협상대책 논의(2018. 10. 3.~4., 제네바 대표부)

- 제네바주재 한국대표부를 방문하여 백지아 대사 및 현지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연구결과 전달 및 협상대책, 우리나라의 입장 논의
- 참석자: KIEP 서진교 선임연구위원 등

▨ **산업통상자원부 WTO Academy 개최(2018. 11. 2., 산업부 5층 회의실)**

- 산업부 WTO 담당자 및 관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WTO 개혁논의 교육 및 토론을 통한 연구결과 전달
- 참석자: KIEP 서진교 선임연구위원, 김민성 전문연구원 등

▨ **WTO 개혁 관련 관계기관 회의(2018. 12. 4., 산업부 5층 회의실)**

- 제네바 대표부 권혁우 참사관 및 산업부 WTO 담당자와 및 외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WTO 협상 대응전략 논의
- 참석자: KIEP 서진교 선임연구위원, 김민성 전문연구원 등

대안의 정책화 실적

▨ **G20 통상장관회의에서 다자규범에 기반한 WTO 체제의 기능회복을 위한 회원국 간 공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2018. 9. 14.).**

- 산업부 김창규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참석하여 KIEP가 참석한 WTO 전문가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국 대표와 국제 통상현안 논의

▨ **WTO 통상장관회의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WTO 개혁논의 적극 참여 발언(2018. 10. 25.)**

-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WTO 개혁 12개국 초청 통상장관회의에서 김현종 통삽교섭본부장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WTO 개혁논의 적극 참여, 분쟁해결절차 최우선 논의" 등을 발언

▨ **「WTO 분쟁해결제도의 개혁」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이 관철(2018. 11. 26.)**

- 우리나라를 비롯한 12개국 공동제안에 WTO 상소기구 개혁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상소심 90일 시한, 임기만료 상소위원의 역할" 등이 반영(WTO, WT/GC/W/752, "Communication from The EU, Canada, China, India, Norway, New Zealand, Switzerland, Australia, ROK, Iceland, and Mexico to the General Council" 26 Nov. 2018)

▨ **G20 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의 리트리트 발언문에 본 연구의 WTO 개혁 지지내용이 포함(2018.11.30.)**

- "공정한 무역을 위한 WTO 개혁에도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G20 정상 리트리트 발언문: http://www1.president.go.kr/articles/4988)

▨ **농림부 등 정부부처의 보조사업계획에서 'WTO 규정과의 합치성 검토' 추가(2018. 12. 13.)**

- 정부보조사업 수행시 WTO 관련 규정과의 합치성 검토를 통해 WTO 통보 강화에 대비

정책효과 파급력 및 영향력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우리나라의 WTO 협상대책은 이미 12개국 공동제안으로 반영되었으며, 그 외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WTO 협상대책과 관련하여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

- 특히 통보강화 관련 우리나라의 보조정책에 대한 WTO 합치성 검토 등은 농림부 등에서 실제 시행

▨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신방향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새롭게 제시된 정책방향으로, 실천력 있는 세부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향후 정부의 다자통상정책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연구내용	정책적 기여도 달성 정도와 우수성
WTO 성과와 한계	1995년 WTO 출범 이후 최근까지 시장개방(상품 및 서비스), 지재권, 분쟁해결, 그 외 DDA 협상 및 복수국간협상을 통한 성과와 한계를 분석시, 다자통상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성과 |** • 상품시장개방 효과 제시 • 지재권 및 분쟁해결제도 개선 효과 제시 • 기타 ITA, GPA 및 무역원활화협정 이행 제시 **| 문제점 |** • 의사결정의 문제점 • 일괄타결방식 • 서비스 세이프가드 • 분쟁해결제도의 이행문제
WTO 체제 개편방안	WTO 체제 개혁 의제별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WTO 협상대책 수립에 직접 영향 **|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대체로 지지 |** • 단, 벌칙강화는 중도 **| 분쟁해결제도: 상소기구 개편 |** • 상소심, 임기만료 상소위원 등에 구체적 제안 **| 개도국 세분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 **| 신무역이슈: 주도적 참여 |**
WTO 체제 개편시 한국의 참여 및 대응방안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신방향 제시 • WTO내에서 위상 강화 • 포용적 무역의 선도 • 양자 및 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 • 다자통상의 지속가능성 강화

02

한미 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

배찬권/김영귀·이수영·강준구·김혁황·박혜리·정민철

연구목적과 기대효과

| 연구목적 |

▨ **「통상절차법(제15조)」에 따르면, 통상조약 발효 이후 5년마다 이행상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 한미 FTA는 2012년 3월 발효되어 2017년 현재 이행 5년이 경과함에 따라 통상절차법 상 이행상황평가 대상
- 이행상황평가는 통상절차법이 정한 FTA 경제적 효과(교역, 투자, 성장, 후생, 생산, 고용 효과), 피해산업 국내보완대책(농축산업, 수산업) 실효성 평가로 구성

▨ **법·규정상 연구필요성 외에도 미국의 통상압박에 따른 한미 FTA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므로 한미 FTA 발효후 나타나고 있는 경제적 현상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평가가 필요**

- 미국은 한미 FTA 이후 양자 간 무역수지 적자 증가를 이유로 대한국 통상압박을 강화(미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를 끔찍한 FTA라고 언급)
- 국내적으로는 농축수산물의 대미 수입증가에 따른 피해 현실화, 보완대책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 등으로 인해 분석 필요성이 제기

| 기대효과 |

▨ **한미 FTA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엄밀한 분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FTA 효과성을 높이는 정책수립에 활용**

- 특히 한미 FTA 경제적 성과와 국내보완대책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FTA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적 지지 기반을 확보하는 데 기여
- FTA 추진정책, 국내보완대책 등 국내 FTA 관련 정책수립 및 보완의 근거로 활용

▨ **미 통상압박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과 한미 FTA 개정협상 전략 수립 과정에서 연구결과를 활용**

- 미국의 한미 FTA 불공정성 주장에 대응하여 반박·설득 논리의 통계적 근거를 제공하고, 한미 FTA의 호혜적 효과를 미국과 공유함으로써 개정협상에 기여

정책대안 제시

**이하는 주요연구결과(연구보고서 원문 내용)로,
보고서 요약문(pp. i-xxi)에서 발췌**

▨ 한미 FTA 발효 이후 세계무역의 둔화세 속에서도 양국간 교역은 증가했으며, 양국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도 확대

- 연평균 교역증감률('12~'16): 수출 대세계 △2.5%, 대미 3.2%
  수입 대세계 △6.0%, 대미 △0.1%
- 시장점유율('11 → '16): 한국 수입시장 내 미국 점유율 8.5% → 10.7%
  미국 수입시장 내 한국 점유율 2.6% → 3.2%

▨ 한국은 상품수지, 미국은 서비스수지 흑자 확대

- 발효 전 5년('07~'11) 대비 발효후 5년간('12~'16) 수지 변화는 상품수지 127.9억 달러, 서비스수지는 △29.3억 달러

▨ (상품) 발효 전후 5년('07~'11과 '12~'16)을 비교할 때, 한미 FTA는 양국 상품 무역의 균형적 확대에 기여

- FTA 교역효과(교역증가분 중 FTA가 기여한 정도)는 기여 금액의 경우 한국이, 기여율은 미국이 더 큼; 전체 수출증가분(184억 달러)중 FTA로 인한 증가분은 31.6억 달러(17.2%) ~ 66.3억 달러(36.0%), 전체 수입증가분(56.1억 달러) 중 FTA로 인한 증가분은 20.5억 달러(36.5%) ~ 26.6억 달러(47.4%)
- 수출효과는 자동차 등 수송기기, 기계, 철강·비철금속, 화학·고무·플라스틱 부문에서, 수입효과는 농축수산식품업, 화학·고무·플라스틱, 수송기기(자동차)에서 발생
- 무역수지와 관련하여 미국이 문제삼고 있는 자동차와 철강의 대미수출과 FTA 간 관련성은 미국의 주장과는 달리 크지 않은 편

FTA 이후 산업별 수출증감액과 FTA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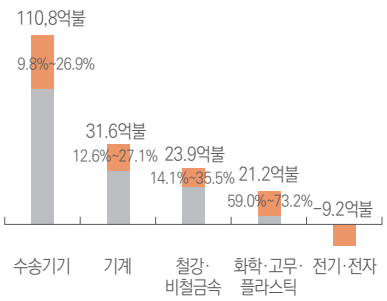

FTA 이후 산업별 수입증감액과 FTA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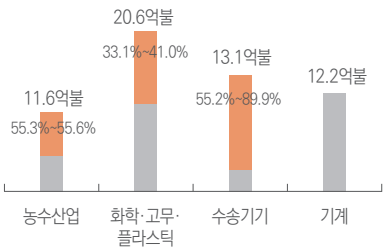

▨ (서비스) 수출은 FTA 발효 전후 5년 대비 13.6억 달러(152억 달러 → 165.6억 달러, 9.0%), 수입은 42.9억 달러(248.5억 달러 → 291.4억 달러, 17.3%) 증가

- FTA으로 인해 교역과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기타사업서비스, 여행 부문의 수출입이 증가하였고, 지재권사용료의 대미수입도 증대

▨ (투자) 한미 FTA 발효후 양국간 투자는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협정이 양국간 투자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FTA 효과: 대미 투자증가분(28.3억 달러)의 35.0%(9.9억 달러), 대한 투자증가분(10.8억 달러)의 29.3%(3.2억 달러)로 추정

▨ (한미 FTA는 양국간 교역 증대를 통해 경제성장과 후생증가에 이바지 했으며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 역할

- (성장, 후생효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발효후 5년 간 0.27% ~ 0.31%, 소비자 후생은 40.9억 달러 ~ 54.7억 달러 증가
- (생산, 고용효과) 생산액은 연간 4.18조원 ~ 11.8조원 증가, 일자리는 5년 간 16,803개 ~ 57,463개 창출
- '11년 사전영향평가(단기, 5년)와의 비교

성장효과	후생효과	생산효과	고용효과
0.02%	5.3억 달러	4조 6,837억원 * 제조업 4.2조원, 농업 4,668억원, 수산업 169억원	4,300명

▨ 국내보완대책은 농수산업 생산증대와 피해감소에 기여

- (농업생산액) FTA 발효전 5년 대비 연평균 생산액은 6.2조원 증가; FTA로 인한 생산액 감소 추정치는 5년 누적 9,753억원, 연평균 1,951억원으로 사전영향평가(연평균 4,668억원)보다 감소
- (농업분야 보완대책 실효성) 농업인의 피해보전과 국내농업의 체질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 20.5조원('08~'16) 집행(5개 정책목표, 95개 사업); 계측가능사업(4.5조원) 대상 분석결과 생산액 증가효과는 5.3조원(115.7%, 연평균 2,636억원)
- (수산업생산액) FTA 발효후 수산업 연평균 생산액은 0.5조원 증가; FTA로 인한 생산액 감소 추정치는 연평균 169억원(수출+수입효과 고려)~242억원(수입효과만 고려)으로 사전영향평가(169억원)보다 크거나 유사
- (수산분야 보완대책 실효성) 수산업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8,876억원('08~'16) 집행(4개 정책목표, 27개 사업); 계측가능사업(6,644억원) 대상 분석결과 생산액 증가효과는 8,871억 원(연평균 986억 원)

대안의 정책화 과정

〈연구수행 단계〉

▨ 정책 주무부서-연구진 간담회

- 통상교섭본부 통상국내대책관실 연구추진회의 10여 차례 이상 개최

▨ 정책 주무부서 및 관련부서 참여 연구중간보고 실시(2017. 9. 19.)

- 통상국내대책관실, 한미 FTA 개선협상 관련부서(통상교섭본부 통상정책총괄과, 미주통상과, FTA 이행과 등)가 참여하여 연구내용을 공유

▨ 통상교섭본부 이외 주요 관련부서 의견수렴(2018. 2.~3.)

-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자동차항공과 등 주요 산업담당부서에 연구결과를 회람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보고서에 반영

〈연구결과활용 단계〉

▨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발표(2017. 10. 4., 워싱턴 DC)

- 한미 FTA 효과분석 주요내용을 발표
- 참석자: KIEP 정철 부원장, 산업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로버트 라이시저(Robert Lighthiz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기재부, 외교부, 농림부, 국토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 발표(2017. 11. 10., 서울 코엑스)

-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을 발표
- 참석자: KIEP 김영귀 연구위원, 산업부 강성천 통상차관보, 산업부 유명희 통상정책국장 등

〈연구결과보고 단계〉

▨ 2018. 1. 통상교섭본부 국장급 회의안건

▨ 2018. 12.~2. 통상교섭본부 통상국내대책관-본부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고

▨ 2018. 1. 통상비서관 보고

▨ 2018. 2.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

▨ 2018. 4. 최종연구보고서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출

▨ 2018. 5. 2.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제2차 성과평가분과 회의안건

〈연구결과확산 단계〉

▨ 산업부 명의 보도자료 배포(2018. 4. 10.)

▨ 연구결과 일반 공개: 정부FTA포털 fta.go.kr, 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go.kr

대안의 정책화 실적

▨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발표자료 작성에 연구결과 활용

- 「제1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2017. 8. 22., 서울)」에서 미측은 한미 FTA 이후 대한(對韓) 무역적자 증가를 지적하면서 FTA 개정 요청, 이에 한국은 한미 FTA 효과, 조사, 분석, 평가를 하여 이를 바탕으로 향후 논의방향을 결정해야 함을 강조

-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2018. 10. 4., 워싱턴DC)」에서 1차 특별회기 우리측 의견에 따라 KIEP 발표로 한미 FTA 상호 호혜성, 한미 FTA와 미 무역수지 적자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FTA 효과 분석 내용을 미측과 공유
- 발표내용 요약

> • 한미 FTA는 양국 교역과 투자 확대, 시장점유율 증가 등 양국에 상호 호혜적으로 작용
> • 지난 5년 간 한미 FTA 효과 분석결과, 미국의 대한 수입보다 한국의 대미 수입과 관세철폐 효과 간 상관관계가 더 크다는 점을 확인
> - 대미 수입이 대폭 증가한 자동차, 화학, 기계, 농축산물 등 품목에서 수입증가 간 연관성 뚜렷
> • 장기적으로도 한미 FTA를 바탕으로 양국간 균형 있는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전망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 발표자료 작성에 연구결과 활용

- 통상절차법 제7조에 따른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2017. 11. 10., 서울 코엑스)」에서 산업부와 KIEP가 이행 5년 간 한미 FTA 상호 호혜적 성과와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효과를 발표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서 제출(2017. 4. 10.)

- 통상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연구결과 제출

산업부, 「한미 FTA 발효 5년간 이행상황평가 결과」 보도자료 배포(2018. 4. 10.)

- '한미 FTA 양국교역의 균형적 확대에 기여, 교역증대를 통해 경제성장과 후생증가에도 기여'를 골자로 보도참고자료 배포
- 중앙일간지, 공중파 뉴스, 인터넷 매체 등 대부분 언론에서 보도참고자료 내용과 관련 분석 기사를 수록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제2차 성과평가분과 회의 안건에 반영(2018. 5. 2.)

- 성극제 위원장, 국내대책위 위원 10명,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한미 FTA 이행상황평가 결과를 안건으로 논의(KIEP 배찬권 연구위원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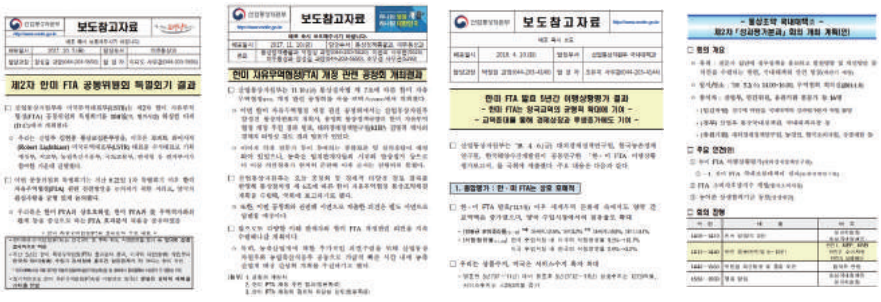

정책효과 파급력 및 영향력

▨ 한미 FTA 이행상황평가 보고서는 통상절차법상 제출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FTA 정책 및 보완대책 수립·개선에 기여

- 또한 FTA 효과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통해 정부 통상정책의 신뢰성을 증진하고 향후 원활한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연구보고서 원본은 국회보고 후 인터넷을 통해 일반 공개)

▨ 한미 FTA 이행상황평가 기간과 한미 FTA 개정협상이 맞물리면서 연구내용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 통상압박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과 협상전략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

- 한미 FTA 효과의 호혜성, 한미 FTA와 미국 무역수지 적자와의 관계, 특히 무역수지에서 미국이 문제삼고 있는 철강 및 자동차 대미 수출과 한미 FTA 간 관계 분석결과 제시

연구내용	정책적 기여도 달성 정도와 우수성
한미 FTA 발효후 교역·투자 현황 분석 및 경제적 효과 추정	한미 FTA 이행 5년 간 양국의 교역(상품·서비스) 및투자 관계 변화 분석 • 한미 FTA 관세양허 스케줄과 연계하여 양국간 상품교역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자동차, 철강을 포함한 세부 산업수준에서 FTA와 상품 수출입 변화간 관련성 분석 • 한미 FTA 발효후 세부 서비스 부문에서 양국간 교역변화 요인과 제조업·서비스 부문의 직접투자 현황을 분석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한미 FTA 이행 5년의 경제적 효과를 실증분석 • 한미 FTA의 수출, 수입, 투자, 성장, 후생, 생산, 고용 효과를 세부산업(농축수산식품업, 광업, 6개 제조업)별로 제시
한미 FTA 발효후 농축수산업 생산 피해와 국내보완대책 성과분석	한미 FTA에 따른 농업부문의 생산감소와 국내 보완대책의 효과를 세부 단위에서 제시 • 농축산물 생산감소 효과를 축산, 곡물, 과실, 채소류 등 분류별로 추정; 수산물 생산감소 효과를 어종별로 제시 • 국내보완대책의 사업별 성과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농축산업과 수산업의 생산증가 효과를 추정
종합평가	현황분석과 실증분석을 통해 한미 FTA에 따른 상품무역의 균형적 확대, 서비스·투자 확대 등 양국간 호혜적 효과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긍정적 효과를 입증 • 양국간 상호 호혜적 FTA 효과는 양국 상품 및 서비스 수입시장에서 양국의 점유율 확대로 나타나고 실증분석 결과가 이를 입증 • 한미 FTA는 양국간 직접투자(특히, 대미투자) 증가에 기여 한미 FTA에 따라 농수산시장 개방으로 생산피해가 발생했으나 예상치를 밑도는 수준이며, 국내 보완대책은 경쟁력 강화와 생산증가를 통해 수입증가에 따른 피해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FTA 성과평가의 기준으로서 무역수지 지표의 한계를 지적하고 경제성장률과 소비자후생에 초점을 맞춘 성과평가의 필요성 제기 • 무역수지 현황에 기반한 보호무역이 장기적으로 가져올 경제적 부작용을 경고

03

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영향에 관한 연구: UNCTAD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조문희/김종덕·박혜리·정민철

연구목적과 기대효과

| 연구목적 |

▨ **보호무역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부상한 비관세조치가 교역 및 시장구조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가별 특성에 맞는 정책방안을 도출**

- 이를 위해 (1) 주요국의 최근 비관세조치를 중심으로 신보호무역주의 확산 현황을 파악
- (2) 최근 새롭게 구축된 UNCTAD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와 기존의 비관세조치 관세상당치 추정 방법론을 이용하여 각기 다른 유형의 비관세조치들이 무역둔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

| 기대효과 |

▨ **KIEP-UNCTAD 2017년도 공동작업으로 NTM-HS코드 수출입 자료를 연계한 바, 이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현황을 파악하고 확보된 자료를 중심으로 관세상당치를 추정함으로써 비관세조치의 경제적 영향을 좀더 객관적으로 비교 가능하도록 분석**

- KIEP-UNCTAD 2017년도 공동작업으로 완성된 DB를 이용하여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HS코드 기준 품목별·산업별로 분류하고, 비관세조치가 많은 품목(산업)을 발굴하거나 우리나라 주요 교역품목에 대한 비관세조치 현황을 살펴보고, 나아가 동일한 MAST 분류방식 기준으로 작성된 각국의 비관세 조치와 비교·분석함으로써 협상이나 비관세 정책방향 설정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비관세조치의 구성요소를 식별하고 산업별로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를 추정하여 향후 협상이나 정책방향 설정에 기여
- UNCTAD NTM 프로그램 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향후 비관세조치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긴밀한 공조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정책대안 제시

| 주요 연구결과 |

▨ **실증분석에서는 전체 비관세조치의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SPS와**

TBT를 중심으로 농축수산업, 광업, 섬유/의복/기타, 화학, 철강/비철금속, 수송기기, 전기/전자, 기계 등 8개 산업별로 비관세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SPS) 농축수산업과 섬유/의복/기타 산업에서 교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세상당치는 각각 6.2%, 12.4%로 추정되어 상대적으로 섬유/의복/기타 산업이 높게 나타났고, 화학산업의 경우 SPS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TBT) 전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했는데, 전기/전자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교역을 저해하는 반면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 TBT가 교역을 촉진
- (TBT의 교역 촉진 메카니즘) 분석대상 국가를 소득수준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양국간에 기술격차가 존재할 경우 비관세조치가 기술 장벽이 아닌 기술 표준으로 작용하고,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기술 표준에 대한 순응비용이 높지 않은 반면 기술 표준이 거래비용을 대폭 낮추기 때문에 오히려 교역이 촉진
- (농축수산업) SPS와 TBT가 농축수산업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나 개도국(수입)-선진국(수출) 조합에서 비관세조치가 수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섬유/의복/기타 산업) SPS와 TBT 모두 수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수입국/수출국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지 않음.
- (화학 산업) TBT가 모든 경우의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기/전자 산업) 개도국이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TBT는 교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선진국이 개도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TBT가 오히려 수출을 촉진
- 이는 이론 및 기존 선행연구들의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로, 기술 격차 등으로 인해 개도국의 특정 유형의 비관세조치가 장벽보다는 표준으로 작용하여 교역을 촉진하는 예라고 할 수 있음.

| 정책제안 |

▨ 국제적 기준으로 작성된 비관세조치 DB를 중심으로 비관세장벽의 대외적 대응 강화

- 비관세조치는 법령문구 자체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나 해당 법령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또는 자의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수집 및 공유를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산업인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의 수출 시 TBT가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에서 요구하는 기술 표준 혹은 현지 시장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 진출 시 발생하는 초기 순응비용을 낮춰 줄 경우 TBT가 오히려 우리 수출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는 해외 비관세장벽 정보 획득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수출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비관세조치와 관련된 통상협상에서의 논의 활성화와 국제적 협력 강화

비관세조치는 관세와 달리 한 국가의 자발적이고 일방적인 개방 노력과 제도 개선이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비관세조치는 정량적 관세와 다른 정성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간 규제의 양립성 및 조화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글로벌 가치 사슬의 지속적인 발달과 확장은 이러한 국가 간 제도적 조율과 조화가 큰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비관세조치 및 국내 규제와 관련된 다자차원의 협력 노력은 더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국제적 논의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적 표준의 확립 노력과 무역의 저해 요인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나 비관세장벽의 철폐이다. 본 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해온 바와 같이 규제는 그 자체로 부정적 영향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공익의 목적으로 도입된 규제의 경우 국가 간 표준을 도입하거나 상호 인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 단순히 각국의 표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우리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우군을 확보하는 아웃리치(outreach) 활동을 강화해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 비관세장벽의 경우 각국이 공유하는 공통의 DB 부재로 인하여 감축을 위한 객관적인 목표설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공통된 분석체계 구축을 위한 통상협정차원의 노력이 중요
- 또한 국가 상호 제도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할 필요

▨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속적인 연구 추진

비관세조치는 그동안 일관성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부재로 비관세조치가 미치는 다양한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국제 공조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엄밀한 분석을 통해 국내적으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규제를 유지하는 동시에 무역에서의 비용은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대안의 정책화 과정

▨ **우리나라는 UNCTAD와 ERIA(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RCEP 회원국 6개국 대상 비관세조치 DB 구축 프로젝트에 2016년부터 참가**

- UNCTAD와 DB 구축 세부 내용 조율을 위하여 매 2주마다 UNCTAD측 세부작업 의견 수렴 및 요청사항 수정 등 수행

▨ **UNCTAD·ERIA 주최 Non-Tariff Measures in East Asia Validation Workshop 참석(2017. 3. 2~3.,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6개국의 비관세조치 DB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각국의 비관세 장벽의 유형과 내용에 대하여 논의
- 참석자: KIEP 조문희 부연구위원, 최보영 부연구위원 등

▨ **APEC 실무그룹회의 (Capacity Building Workshop on Addressing Non-Tariff Measures in FTAs/RTAs under the 3rd REI CBNI) 참석(2018. 5. 17.,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

- 비관세조치 관련 APEC 차원의 공조 및 협력 방안 논의
- Justin Allen CTI 의장은 회의를 후원한 뉴질랜드 정부와 한국정부에 감사 메시지 전달
- 동 회의에서 NTM의 개념, UNCTAD NTM DB 소개 등과 함께 UNCTAD 데이터, WTO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APEC 회원국들이 어떤 비관세 조항들을 포함해 왔는지에 대해 발표(KIEP 최보영 부연구위원)
- 동 회의를 통해 회원국들은 MRA와 같은 상대적으로 협의가 용이한 방안에서 시작하여 규제협력 등의 장기적 목표 설정에 대해 논의

대안의 정책화 실적

▨ **APEC 각료회의에서 정보공유 메카니즘(information sharing mechanism)을 지지하는 내용이 각료선언문(제20항)에 포함(2018. 11. 15.)**

- 이는 KIEP가 참석한 APEC 실무그룹회의(2018. 5. 17.)에서 논의된 비관세조치 관련 APEC 차원의 공조 및 협력 방안과 관련하여 APEC 회원국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내용을 바탕으로 함.
- 이로써 각국의 다양한 비관세조치에 대한 일관성있고 분석가능한 DB 구축이 장기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UNCTAD TRAINS 데이터베이스(trains.unctad.org)에 한국의 비관세조치가 등재되었으며, 관련하여 KIEP가 파트너 기관으로 언급(2018. 12. 20. 이후)**

(https://unctad.org/en/Pages/DITC/Trade-Analysis/Non-Tariff-Measures/NTMs-partners-and-donors.asp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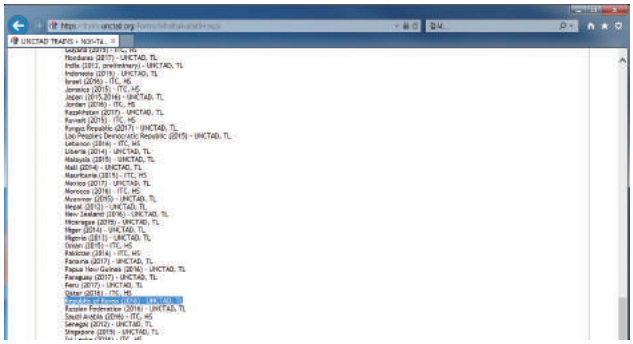

(https://unctad.org/en/Pages/DITC/Trade-Analysis/Non-Tariff-Measures/NTMs-partners-and-donors.aspx)

정책효과 파급력 및 영향력

▨ **APEC 실무그룹회의에서 비관세조치 관련 공조 및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고 APEC 각료회의에서 정보공유 메카니즘을 지지하는 내용이 각료선언문에 포함**

- 이로써 각국의 다양한 비관세조치에 대한 일관성 있고 분석 가능한 DB 구축이 장기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이러한 DB 구축 작업과 함께 향후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한국이 비관세 조치와 관련된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UNCTAD TRAINS 데이터베이스에 한국의 비관세조치가 등재
- 현재 비관세조치 DB 구축 관련 논의는 UNCTAD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보고서는 WTO나 OECD와 함께 작성

연구내용	정책적 기여도 달성 정도와 우수성
NTM-HS코드 수출입 연계 자료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	**한국의 14개 주요 수출대상국의 대세계 및 대한국 수입자료와 비관세조치 지표를 이용하여 산업별, 비관세조치 유형별 분석을 실시** • 비관세조치는 5개 유형(SPS, TBT, 선적전검사, 수량제한조치, 가격통제조치)에 대해 분석을 실시 • 건수, 빈도지수(frequency ratio), 범위지수(coverage ratio) 등 3개 지표를 활용 • 범위지수의 경우, 대세계 값과 대한국 값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한국의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조치 유형과 산업을 식별
확보된 자료를 중심으로 관세상당치를 추정하여 비관세조치의 경제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비교 가능하도록 분석	**– 비관세조치가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이론분석 및 실증분석을 실시** **– 이론모형: 비관세조치 등 규제도입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관계를 중심으로 무역의 패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Copeland·Taylor 모형으로 분석** **– 실증분석: SPS와 TBT를 중심으로 농축수산업, 광업, 섬유/의복/기타, 화학, 철강/비철금속, 수송기기, 전기/전자, 기계 등 8개 산업으로 구분하여 비관세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TBT가 교역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을 찾기 위해 분석대상 국가를 소득수준별로 구분하여 보다 세분화된 분석을 실시
UNCTAD NTM 프로그램 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향후 비관세조치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긴밀한 공조관계를 지속	**APEC 각료회의 각료선언문에 정보공유 메커니즘 지지 내용 포함, UNCTAD TRAINS 데이터베이스에 한국의 비관세조치 등재 등의 성과** • 비관세조치도 관세와 마찬가지로 국가간 비교와 객관적 경제적 영향 분석이 가능하도록 기반 마련 • 이러한 DB 구축과 함께 향후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한국이 비관세조치 관련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04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최장호/김범환

연구목적과 기대효과

| 연구목적 |

▨ **남북한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경제통합모형 구축**

- KIEP 통일국제협력팀이 보유한 경제통합모형을 기본으로, 모형 정립을 위해 사용한 다양한 개념과 쟁점들을 중점적으로 검토
- 한국의 다양한 경제현안을 통일과 연계하여 분석하고 더불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이 양측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
- 궁극적으로 남북한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해 정부의 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시민사회에 통일에 관한 긍정적인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할 때,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 기대효과 |

▨ **한층 심화되고 구체화된 남북한 통일 및 통합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통일/통합방안의 용어정립을 통해 학제 간 연구 촉진
- 적정 통일비용 및 순편익 개념 도입
- 국내외 통일 지지 여론의 조성

정책대안 제시

▨ **남북 경협이 재개되었을 때, 개성공단사업,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사업, 경수로사업, 금강산사업, 조선협력단지 사업,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 순으로 남북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결과를 감안한 경협사업의 추진 필요**

- 남북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협을 선택적으로 실행한다는 가정하에서, 개성공단사업과 남북 철도·도로연결 사업이 남북한에 가져오는 경제효과가 가장 커 이를 선제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음.

〈표 4-2〉 각 경협별 경제성장효과 분석 종합

	남한 누적성장효과 (연평균 성장효과)	북한 누적성장효과 (연평균 성장효과)	남북 합계 누적성장효과 (연평균 성장효과)
금강산사업	4.1조(0.1조)	17.3조(0.6조)	21.5조(0.7조)
개성공단사업	159.2조(5.3조)	51.3조(1.7조)	210.6조(7.0조)
경수로사업	-1.9조(-0.1조)	29.8조(1.0조)	28.0조(0.9조)
남북 철도 및 도로연결 사업	1.6조(0.1조)	92.6조(3.1조)	94.2조(3.1조)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	-0.3조(-0.01조)	9.8조(0.3조)	9.5조(0.3조)
조선협력단지 사업	2.6조(0.1조)	14.2조(0.5조)	16.9조(0.6조)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사업	4.1조(0.1조)	34.4조(1.1조)	38.5조(1.3조)

- 노동집약도가 높은 경협사업이 투자액 대비 남북한 성장효과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같은 결과를 참고하여 경협사업을 실행할 필요가 있음.

〈표 4-3〉 각 경협별 노동집약도, 성장효과/총투자액 비교

	노동집약도 (인프라비율)	남한 성장효과 /총 투자액	북한 성장효과 /총 투자액	남북한 총성장효과 /총 투자액
금강산사업	34.4(22.1%)	1.0	4.0	5.0
개성공단사업	381.4(24.4%)	14.8	4.8	19.5
경수로사업	4.8(82.8%)	-0.7	11.8	11.1
남북 철도 및 도로연결 사업	76.5(96.8%)	0.4	21.6	22.0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	0.3(1.5%)	-0.1	4.0	3.9
조선협력단지 사업	51.0(34.0%)	2.0	11.1	13.1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사업	5.3(8.0%)	0.6	4.8	5.3

▨ 남한 경제성장에 음(-)의 효과를 가져오는 경협사업은 해당 자원을 경협사업 외에 다른 부문에 사용하거나 기존 사업계획을 효율적인 방향으로 다시 설계할 필요

- 성장에 있어 음(-)의 효과가 도출된 경협사업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기에 해당 경협사업 추진을 재고할 필요
- 혹은 양(+)의 성장효과가 도출된 경협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이를 참고하여 기존 경협계획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경수로사업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에서 남한의 경제성장효과는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중략)... 먼저 경수로사업의 경우 사업운영상의 혜택 중 전부를 북한이 획득하는 유일한 사업이다. ...(중략)... 그 결과 남한의 경제성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 한편,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은 사업운영상의 이득을 남한이 획득하는 경협이나 남한의 경제성장에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 결과는 사업방식에서 비롯된 것인데 다른 사업들과 달리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은 북한의 노동력을 고용하지 않는다. ...(중략)...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은 북한 노동력을 고용하는 효과가 남한의 경제성장에 중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북한의 생산성 성장률 증가는 북한 경제성장효과 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경협사업 추진 시 북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대부분의 경협사업이 남한 주도로 추진되나 남한의 노동력과 자본의 투입이 북한의 생산성 성장률을 높이는 데 긍정적 기여

> 셋째, 남북 경협에 의해 유발되는 북한의 생산성 성장률 증가는 북한 경제성장을 늘리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협 사업에 참여하는 남북한 노동력과 자본은 경협 초기부터 북한의 생산성 성장률을 급격하게 증가시키며 이후에도 생산성 성장률을 높이는 데 일정부문 기여하고 있다. ...(중략)... 따라서 경협을 진행함에 있어 생산성을 통해 북한의 경제성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경협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존 남북경협 형태의 변화가 필요

- 북한이 단순 노동력을 제공하고 현금을 획득하는 구조로부터 탈피하여 사업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경협의 산출물을 재화 형태로 가져가는 구조로 바뀔 때 북한의 생산성은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

첫째, 경협사업의 사업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남북경협 형태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협력방식은 일반적으로 남한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북한이 토지와 자연자원, 노동을 제공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북한은 그 대가로 현금을 수취해가는 구조였으며 사업 운영에는 대부분 참여하지 않았다. 중장기적으로는 북한도 임금과 현금을 단순 획득하는 대신 사업운영에 참여하여 경협의 산출물을 재화(비현금 형태)로 가져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협의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경우에 북한의 생산성 성장률도 보다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일부 경협사업도 기존 단조로운 운영형태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확장해나갈 수 있는 구조로 재설계할 필요

본 연구의 분석결과, 남북한 경제통합으로 인한 북한의 성장효과 증대는 북한의 노동력, 자본·인프라 투자 보다는 북한의 생산성 개선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생산성을 빠르게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남북경협 과정에서 북한이 노동력만 제공하는 것을 넘어 남한의 경영 및 관리 기법 습득, 남북한의 산업기술 공유, 북한의 낙후한 제도 개선 등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 북한 노동력 고용을 크게 늘리거나, 북한 내 투입된 자본의 활용도를 높여 남한의 성장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둘째, 경협에서 남한 성장효과 비중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개성공단사업(75.6%)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에서 남한은 총성장효과의 20% 미만을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투자액 대비 남한 성장효과의 비율도 7개 중 5개의 사업이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노동집약적 경협사업에서 남한 성장효과가 비교적 높게 나왔다는 점을 참고하여 북한의 노동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경협을 추진하는 것이 남한의 성장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북한 노동력 고용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개성공단사업이 남한에 가져오는 성장효과가 가장 크다는 점을 참고하여 향후 경협사업을 추진할 필요
- 경수로사업,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 남한의 자본 활용도가 낮은 사업은 북한 성장효과 대비 남한의 성장효과가 크게 낮은 사업으로 분석결과 나타남.

대안의 정책화 실적

▨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축사에 연구결과(pp. 121-122) 인용(2018. 8. 15.)

- "국책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30년 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철도연결과 일부 지하자원 개발 사업을 더한 효과입니다."

▨ 남북경협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

-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보고서 내용을 인용한 이후 200여건 이상의 언론 보도(KBS, MBC, SBS,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계레, 한국경제 등)가 이루어지면서 국민적 여론 환기에 기여

정책효과 파급력 및 영향력

▨ 남북한 경협 추진 시 남한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분석하여 '북한 퍼주기 논란'을 극복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한편, 보다 효과적인 경협사업 발굴과 각 사업의 성과 분석에 있어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연구내용	정책적 기여도 달성 정도와 우수성
남북경제 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경제 통합모형 구축	2019년에 추진될 수 있는 다양한 남북경협 사업의 성과를 상호 비교하는 근거자료로 활용 • 특히, 남북한 철도연결 사업이 남북한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론임. • 경협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비 통계가 제공된다면 보다 정밀한 분석이 가능

05

북한 무역제도 연구: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

최장호/최유정·임소정·이효영

연구목적과 기대효과

| 연구목적 |

▨ **북한의 무역제도를 국제기준(WTO 규정 체계)에 맞추어 분석하고 남북한 CEPA 체결을 대비하여 북한 무역제도 개선방안을 도출**

- 주요 연구내용은 '북한 대외무역 제도의 변화양상', '세부분야별 북한 무역제도 분석', 'WTO 기준에 부합하는 북한 무역제도 개선방안' 도출
- 북한당국의 시기별 무역제도 정책을 분석하여 경제개방에 대한 북한당국의 방향성, 북한 무역제도의 내용과 특징, 거래관행을 분석한 후 남한의 무역 법·제도 혹은 국제적인 법 및 관례와 비교

| 기대효과 |

▨ **본 연구의 결과는 남북한 CEPA 체결 협상에서 북한에 요구할 수 있는 무역제도 개선안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또한 북한경제의 변화과정에서 중점적인 역할을 할 무역관련 법·제도의 지향점과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

정책대안 제시

▨ **본 보고서는 단기간에 북한경제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수출주도·외국인투자 주도 정책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으로 ①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개정, ② 법치주의 확산, ③ 대북제재 해제, ④ 국제사회로부터 신뢰 회복 및 과거 분쟁 해결, ⑤ 남북한 CEPA와 국제무역협정 체결 및 무역·투자 관련 인력 양성 등을 제안하였음**

▨ **북한 무역관련 법·제도의 3단계 개편안을 제안**

- 북한의 무역관련 법·제도를 국제수준으로 개편하는 것을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남북한 CEPA 체결이 교두보 역할을 수행

제1단계에서는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북한의 무역관련 법·제도를 국제수준으로 개편한다. …(중략)… 제2단계에서는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중략)… 제3단계에서는 북한이 WTO 가입을 전제로 무역관련 법·제도를 개편하게 된다.

▨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대비하여 북한이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무역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충분한 전문가 인력의 양성 필요

중장기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경우에 대비하여 북한이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무역환경을 안정적으로 체결해갈 필요가 있다. 무역협정이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경우라야 북한기업은 물론 외국인 기업도 안정적으로 투자와 생산, 해외 판매 활동을 할 수 있다. 국제무역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충분한 전문가 인력도 양성되어야 한다. 국제무역협정은 그 자체로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기에 자국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가 집단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야 한다.

▨ 북한의 경제성장과 무역확대를 위해 북한 관세율을 적정수준으로 개편해야 함.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세율의 조정은 ① 북한경제와 산업 사정에 맞추어 현재 낮은 수준의 관세율을 적정수준으로 높이는 방안, ② 남한의 1970~80년대 관세율 수준을 기준점으로 하는 방안, ③ 제3세계 체제전환국의 평균관세율을 기준점으로 하는 방안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관세 분야에서 북한의 경제성장과 무역확대를 추구하기 위해서 가장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북한 관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다만, 수출주도 성장 추진을 위해 '원자재에는 낮은 관세, 최종 생산품에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되 이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북한의 비관세장벽은 외국인의 북한 무역 참여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수출주도 성장과 FDI 주도 성장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편이 필요

- 연구결과 북한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은 3통(통신, 통관, 통행) 관련 사항이었음.

북한의 비관세장벽 역시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개편되어야 한다. 다만, 북한의 비관세장벽의 개편은 북한당국의 주민에 대한 통제는 물론, 경제에 대한 통제권과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갖기에 비관세장벽 개편에 대해서는 관세개편보다 더욱 전략적인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남한이 가진 비관세장벽의 개편 경험을 북한이 참조할 필요가 있다.

▨ **북한의 부분적 법치주의는 ① 무역의 양적·질적 성장을 제약 ② 북한 무역 참여자들을 북한주민으로 제한 ③ 무역관련 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법의 구속력을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수출주도·FDI 주도의 경제성장정책을 도모하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개선이 필요**

- 법치주의 확산을 위해서는 법의 양과 질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편하고, 관행과 관례에 의해 처리하던 무역과 투자의 영역을 줄이고 점진적으로 법에 의존하여 무역과 투자를 처리해야 함.

> 부분적 법치주의 개혁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법의 양과 질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확대해가는 한편, ㉡ 노동당의 강령이나 지도자의 교시 등 법 외의 것이 법의 테두리 내로 흡수되는, 즉 관행과 관례가 점진적으로 철폐되고 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방식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그런 연후에야 외국인이 북한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무역과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며, 북한 당국도 여기에 기반하여 수출주도·FDI 주도의 경제성장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북한이 원만한 무역관계를 유지하고 국제사회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는 ① 무역·투자 계약의 성실한 이행, ② 투자로 발생한 이윤의 회수 보장, ③ 상환되지 못한 채무 해결이 필요**

> 먼저 ㉠ 무역·투자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보면, 다수의 대북사업가는 북한이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중략)…북한이 국제사회와 정상적인 경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기업의 문화를 개선해갈 필요가 있다. ㉡ 투자로 발생한 이윤의 회수 보장도 개선되어야 한다. .…(중략)…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신용을 얻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로 발생한 이윤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 채무가 상환되지 못한 경우, 채권국과 경제관계 정상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채권국의 채권 관련 기업이나 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북한의 채무 상환을 요구하면서 경제관계 중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대안의 정책화 과정

▨ **남북경협전략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송부(2018. 5. 8.)**

- KIEP 최장호 부연구위원은 남북경협 전략 수립 관련 자료를 작성 및 송부
- 요청 기관: 기획재정부 남북경제과

▨ **통일부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 전문가 자문 간담회(2018. 6. 25.)**

- KIEP 최장호 부연구위원이 국제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주제로 발표
- 주요 참석자: 통일부 신경제지도 TF단 외

▨ **KBS 라디오 한민족 방송 녹음(2018. 7. 19.)**

- KIEP 최장호 부연구위원은 KBS 라디오 한민족 방송의 〈경제로 통일로〉에서 남북한 기본합의서 개정과 북한의 무역제도에 대해 인터뷰 진행

- 라디오 프로그램 '경제로 통일로' [일요초대석] 방송(2018. 7. 29.)

▨ 국회 세미나(2018. 7. 4.)

- KIEP 최장호 부연구위원이 참석하여 '남북경제협력의 제도화 방안: 남북한 FTA 추진'을 주제로 발표
- 주요 참석자: 민병두 국회의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김영일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장 등

▨ 국회 세미나(2018. 9. 18.)

- KIEP 최장호 부연구위원은 남북경협사업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 참여
- 주요 참석자: 윤관석 국회의원, 신혜성 통일부 남북경협과장 등

▨ 제7차 선진통상포럼 (2018. 9. 27.)

- KIEP 최장호 부연구위원이 '남북교류협력 추진방안: 제도개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
- 주요 참석자: 산자부 관련 인사

▨ 남북교역·경협 전문가 세미나(2018. 9. 28.)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남북교류협력의 비전 모색과 쟁점 분석을 통한 정책대안 발굴을 위해 개최한 세미나 참석
- KIEP는 최장호 부연구위원이 남북경협의 새로운 비전 구축과 가능성 모색에 대해 발표
- 주요 참석자: 남북경협 전문가, 유관기관, 남북경협포럼 회원 등

대안의 정책화 실적

▨ 2018 통일부 업무보고, '법·제도 정비 등 교류협력 기반 공고화'로 연구내용이 반영

-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해 국제사회를 통한 교류협력 확대와 남북교류 촉진을 위한 「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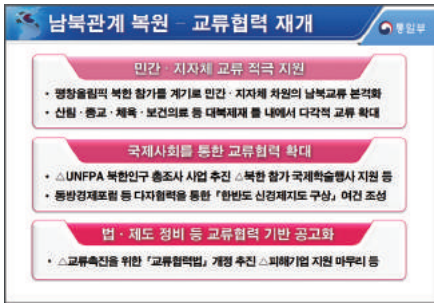

정책효과 파급력 및 영향력

▨ **본 연구의 결과는 북한경제 변화과정에서 중점적인 역할을 할 무역 관련 법·제도의 지향점과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남북한 CEPA 체결 협상에서 북한에 요구할 수 있는 무역제도 개선안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연구내용	정책적 기여도 달성 정도와 우수성
남북한 CEPA 체결을 대비한 북한 무역제도 개선방안 도출 및 한국 정부의 협상 전략 제언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북중 정상회담의 잇따른 개최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재개될 남북경협의 법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 남북한 경협을 위한 법제도적 안정성 확보와 남북한 CEPA 체결은 現 대북제재 상황에서도 도모할 수 있는 남북경협 사업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한 정책제안임 • 기본적인 여건만 조성된다면 남북정상회담 의제로도 활용할 수 있음
최근 북한 무역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북한 경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대외무역제도와 그 관행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며, 본 보고서는 해당 내용과 더불어 북한 무역제도를 국제규범과 비교했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대외관계정상화 과정에서의 대북정책대안 모색에 활용도가 높음 • 그 동안(특히 2010년 이후) 북한 무역제도와 관행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한 보고서가 없어 향후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 과정을 지원하는 데 유의미한 자료를 제공

06

디지털 상거래가 무역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이규엽/배찬권·이수영·박지현·유새별

연구목적과 기대효과

| 연구목적 |

▨ **한국의 디지털 상거래 현황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디지털 상거래가 무역과 고용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

| 기대효과 |

▨ **중소기업에 대한 디지털 상거래 지원정책, 통관절차, 소비자보호, 한중일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싱글마켓, 국경 간 디지털 상거래로부터 파생되는 신무역통상이슈 등 우리 정부가 디지털 상거래와 관련한 단기 및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정책대안 제시

▨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상거래 수출지원 정책 확대**

- 한국 기업의 디지털 상거래를 활용한 수출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의해 진행.

> 2015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 상거래를 통한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였다(제3장과 제4장). 일반상품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달리 디지털 상거래를 통한 수출에서는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 중소기업에 대한 디지털 상거래 지원예산은 제한적인 반면 이러한 지원을 신청하는 중소기업 수는 크게 증가

> 2015년 이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상거래를 통한 수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디지털 상거래 관련 정부사업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 수가 증가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실제로 2010~2015년 여러 정부사업에 지원한 기업 수는 최소 939개에서 최대 2,682개였으며, 2015년 이후 4,412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 디지털 상거래 지원정책에 할당된 정부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해당 정책사업에 지원하는 중소기업 수가 급증할수록 지원정책을 실행함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 디지털 상거래 관련 통관절차 간소화 노력 필요

- 중소기업이 통관상 직면하게 되는 시간비용 및 금전비용이 과한 부담으로 작용

양 기관의 디지털 상거래 수출통계 차이의 추가적인 요인으로 수출신고서 작성 시 신고건당 5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신고대행을 의뢰하는 경우도 건당 1만원 내외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등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비용 문제가 있다. 소비재 위주의 소액상품을 빈번하게 수출하는 중소기업(제4장의 결과)의 경우 신고건당 발생하는 시간비용과 금전비용이 과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최근 관세청이 간이수출신고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나 중소기업에는 여전히 부담

중소기업의 경우 빈번한 디지털 상거래 거래정보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이를 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1.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상거래 수출지원 정책 확대 및 홍보'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상거래 수출지원 정책은 '2. 디지털 상거래 관련 통관절차의 간소화 노력'과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 디지털 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 장치 확대

- 우리나라의 기업·소비자간(B2C) 디지털 상거래 거래빈도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사례 급증

실제로 2017년 상반기에만 해외 온라인 쇼핑몰 관련 소비자불만이 전년동기대비 46.4% 증가한 수치인 5,721건이 접수되었다(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2017). 특히 구매대행, 직접구매, 배송대행 등 디지털 상거래를 통한 해외구매 유형 중 '직접구매'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불만이 전년동기대비 114.4% 증가하였다.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 등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으며, 이 외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국경 간 디지털 상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장치의 강화 필요

디지털 상거래에 의해 파생되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 또는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크다. 아직까지 국경 간 디지털 상거래로부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명시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규범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정책을 강화하면서도 강화된 소비자보호가 국경 간 디지털 상거래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이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중소기업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는 소비자보호의 최적보호수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다.

▨ 한중일 디지털 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협력

- 한중일 디지털 상거래 시장의 확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 중 하나로서 가치가 높음

아시아 지역 국가 중에서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디지털 상거래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한중일 3국간 디지털 상거래를 통한 교역의 활성화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제4장) 고용을 증진시키는(제5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 향후 3국간 디지털 상거래의 활성화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는 데 주요한 동력 중 하나로서 가치가 높을 것이다.

- 한중일 디지털 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협력이 필요

한중일 3국간 디지털 상거래 활성화를 통해 가장 큰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경제주체는 중소기업과 소비자이다. 한중일 3국간 디지털 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시 정책당국은 협력가능한 분야인 국경 간 B2C 디지털 상거래 상품교역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앞서 언급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통관절차의 간소화', '소비자 보호'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디지털 상거래 관련 인적자원 양성, 직업훈련 및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

- 정책당국은 디지털 상거래 관련 정책을 모색할 때 노동시장에서 야기될 사안에 대한 관심 필요

전반적으로 산업 및 기업수준에서 디지털 상거래가 기업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에 기업수준에서 일인당 노동보상액이 대체로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점과 특히 상용직의 일인당 노동보상이 디지털 상거래 활용 후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점 등의 결과도 같이 나타난바, 정책당국은 디지털 상거래 관련 정책을 모색할 때 노동시장에서 야기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 디지털 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제도 정비 필요 증대

정책당국은 디지털 상거래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기업이 고용자를 수요하는 패턴이 변화하고 이 과정에서 고용이 창출되고 파괴되는 노동자원의 재분배 과정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디지털 상거래와 관련된 인적자원 양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노동자원이 재배치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는 다양한 재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새롭게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 포괄적인 디지털 상거래 패널 데이터 구축 필요

- 한국의 디지털 상거래 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빈약

현재 우리나라의 디지털 상거래 현황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분석 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통계청이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쇼핑동향 자료, 2010년 경제총조사와 관세청 자료 정도에 불과하다. 온라인쇼핑동향 자료와 관세청 자료는 B2C 디지털 상거래의 시장규모와 품목별 거래 현황을 살펴보기에는 유용하나 기업데이터와 연계되어 있지 않아 추가적인 분석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2010년 경제총조사가 디지털 상거래 변수를 포함하여 기업수준의 제반 변수들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2015년 경제총조사에서는 도소매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산업에서 디지털 상거래 변수가 누락되었다.

-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의 디지털 상거래 관련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디지털 상거래 관련 데이터 구축 필요

2015년 경제총조사에서 이러한 디지털 상거래 변수가 누락되어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융, 통신, 기타 주요한 서비스 산업의 디지털 상거래 관련 현황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우리나라 데이터상거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 포괄적인 디지털 상거래 패널데이터 구축(이를 이용한 연구결과)은 우리나라가 디지털 상거래 관련 정책수립 시 기초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높을 것이다.

대안의 정책화 과정

▨ 한중일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디지털싱글마켓을 위한 공동연구 Kick-off 미팅 (2017. 5. 25.)

- KIEP는 한중일 전자상거래 협력을 위한 공동연구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논의에 참여
- 참석자: KIEP 이규엽 부연구위원, 나승권 전문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 조수정 과장, 중국 MOFCOM(상무부) 과장, 중국 CAICT(정보통신연구원) 연구진, 일본 METI(경산성) 과장, 일본 JETRO 연구진, TCS 서울사무국 관련자

▨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2017. 6. 15.)

- KIEP는 전자상거래 관련 동향 발표와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제도) 등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참여
- 참석자: KIEP 이규엽 부연구위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노건기 과장, KOTRA 김정곤 박사, 한국무역협회 심준석 정책협력실장 등 11개 유관기관 참여

▨ 한중일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디지털 싱글마켓을 위한 공동연구 2차 회의 (2017. 8. 8.)

- KIEP는 한중일 디지털 상거래 협력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논의와 이를 바탕으로 3국 간 협력 방안을 위한 구체적 방법에 대한 논의 참여
- 참석자: KIEP 이규엽 부연구위원, 김영귀 연구위원, 나승권 전문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 고현 과장, 조아라 사무관, 중국 MOFCOM(상무부) 과장, 중국 CAICT 연구진, 일본 METI(경산성) 과장, 일본 JETRO 연구진, TCS 서울사무국 관련자

▨ 한중일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디지털 싱글마켓을 위한 공동연구 3차 회의 (2017. 9. 12.)

- KIEP는 한중일 디지털 상거래 협력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 참여
- 참석자: KIEP 이규엽 부연구위원, 배찬권 연구위원, 나승권 전문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 고현 과장, 중국 MOFCOM(상무부) 과장, 중국 CAICT(정보통신연구원) 연구진, 일본 METI(경산성) 과장, 일본 JETRO 연구진, TCS 서울사무국 관련자

▨ 한일 경제협력 전문가 및 유관기관 회의(2018. 3. 30.)

- KIEP는 신북방정책, 일자리 창출, 4차산업 등 신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한일경제 협력 강화 추진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에 참여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협력과 과제를 제시
- 참석자: KIEP 이규엽 부연구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이호준 통상협력국장, 김현철 동북아통상과장, 산업·무역·투자·에너지 등 유관기관 한일 경협 담당자 및 전문가

▨ 디지털 통상전략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1차 회의(2018. 4. 19.)

- KIEP는 디지털 경제화에 따른 산업·통상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수단을 검토하고 효과적 실행방안 제시를 위한 논의에 참여
- 참석자: KIEP 김영귀 연구위원, 배찬권 연구위원, 이규엽 부연구위원,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 이종석 과장, 디지털경제통상과 임미정 사무관

▨ 디지털 통상전략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2차 회의(2018. 5. 19.)

- KIEP는 4월 1차 회의에 이어 2차 회의에 참여하여 디지털 경제화에 따른 산업·통상 환경 변화를 감안한 새로운 통상정책의 방향과 수단을 검토하고 효과적 실행방안의 제시를 논의
- 참석자: KIEP 김규판 연구위원, 김영귀 연구위원, 배찬권 연구위원, 이규엽 부연구위원,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 이종석 과장, 디지털경제통상과 임미정 사무관

▨ 한중일 전자상거래 협력 관련 회의(2018. 8. 23.)

- KIEP는 한중일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논의에 참여
- 참석자: KIEP 이규엽 부연구위원, 이정은 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 강정현 사무관, 일본 경제산업성 담당자, JETRO 연구자

▨ 한중일 FTA 전자상거래 관련 회의(2018. 9. 12.)

- 회의에서는 한중일 FTA 협상 가속화를 위해 3국 공통관심 분야인 전자상거래 등 물류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프로젝트 추진 논의, 이에 KIEP는 한중일 서비스 시장 개방과 관련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협력을 제안
- 참석자: KIEP 이규엽 부연구위원,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 FTA 협상담당관·무역진흥과·유통물류과·동북아통상과·FTA투자과, KOTRA와 무역협회 소속 전문가

대안의 정책화 실적

▨ APEC 통상장관회의, 다자무역체제 및 디지털 무역 논의(2018. 5. 25.~26.)

-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로즈비에서 개최된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은 디지털 무역 촉진을 위한 국가 간 협력에 대한 논의에서 한국의 신산업 직업훈련,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을 소개
- 주요 참석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캐나다, 호주, 칠레, 페루 수석대표
- 보고서 p.139에서 한국 기업의 디지털 상거래를 활용한 수출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디지털 상거래 지원예산은 제한적인 반면, 이러한 지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상거래 수출지원 정책의 확대를 제안
- 보고서 p.142에서 디지털 상거래와 관련된 인적자원 양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노동자원이 재배치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 다양한 재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이들의 구직활동을 도울 수 있는 제도 정비를 제안

< 2018년 APEC 통상장관회의 >

▨ 디지털 통상 이슈를 알리기 위한 홍보만화(2018. 8. 16.)에 연구내용 반영

- 산업부는 국민들에게 디지털 통상을 포함한 통상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먼나라 이웃나라』 저자 이원복 교수를 통해 관련 홍보만화를 제작
- 보고서 pp.138-140에서 관세청의 간이수출신고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통관상 시간비용 및 금전비용이 중소기업에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을 근거로 디지털 상거래 관련 통관절차 간소화 노력이 필요함을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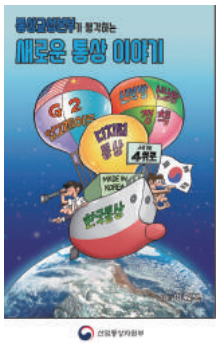

< 산업통상자원부: 새로운 통상 이야기 홍보만화 >

▨ 한중일 FTA 공식 협상 개최(2018. 12. 6.~7.)

- 중국 북경에서 제14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을 개최하고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 등의 핵심 쟁점 분야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상 가속화를 위한 3국간 협력방안을 논의
- 주요 참석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중국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 일본 야마자키 카즈유키 외무성 경제담당외무심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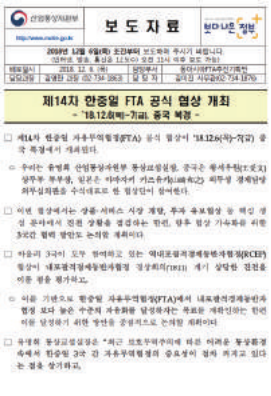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보다 나은 정부

2018년 12월 6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8. 12. 6. (목)	담당부서	통상교섭실 FTA협상기획팀
담당과장	김재진 과장 (02-734-2863)	팀 장	김지성 사무관(02-734-1377)

제14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 개최
- '18.12.6(목)~7(금), 중국 북경 -

□ 제14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협상이 '18.12.6(목)~7(금)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다.

○ 우리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중국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 일본은 야마자키 카즈유키(山崎和之)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한 협상단이 참석한다.

□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 유보협상 등 핵심 쟁점 분야에서 진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협상 가속화를 위한 3국간 협력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 아울러 3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내로라경제동반자협정 정상회의(10월) 계기 상당한 진전을 이룬 점을 평가하고,

○ 이를 기반으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내로라경제동반자협정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자는 목표를 재확인하는 한편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은 "최근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 한중일 3국 간 자유무역협정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을 알기하고,

< 제14차 한중일 FTA 협상 개최 >

▨ 디지털 경제통상정책 추진방향 발표(2019. 1. 16.)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 경제통상과에서 우리나라 디지털 경제통상정책 추진방향 발표
- 주요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노건기, 디지털경제 분야 산학연 관계자 약 100여명, KIEP 이규엽 부연구위원
- 보고서 분석 결과와 제안 내용이 디지털 경제정책 추진방향(안)에 다수 반영
  1) 분석결과 반영: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보고서 26 페이지, 추진방향(안) 1 페이지), 우리나라 산업평균 디지털 상거래 이용률(보고서 35 페이지, 추진방향(안) 1 페이지), 전자상거래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보고서 68 페이지, 추진방향(안) 1 페이지) 등
  2) 제안 내용 반영: 보고서 143페이지에서 제시한 포괄적인 디지털 상거래 패널 데이터 구축 필요성이 추진 방향(안) 마지막 페이지에서 디지털 통상 정책개발 인프라 확충 분야, 디지털 통상정책의 대상범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한 통계 확보로 반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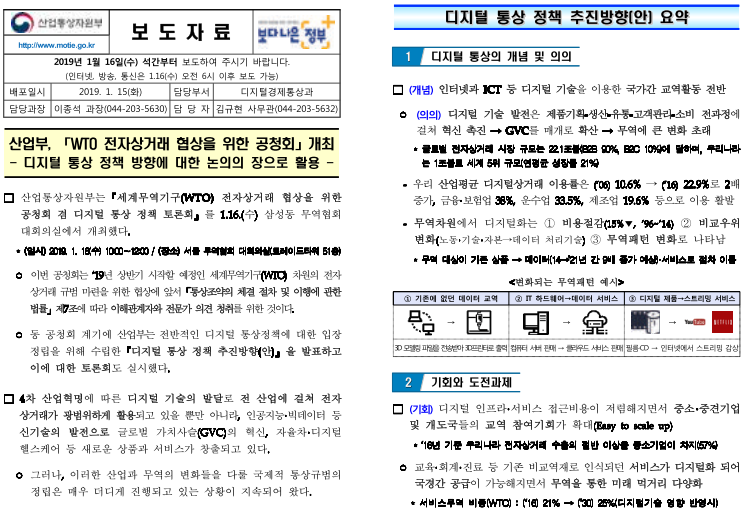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보다 나은 정부

http://www.motie.go.kr

2019년 1월 16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16(수)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 1. 15(화)	담당부서	디지털경제통상과
담당과장	이중석 과장(044-203-5630)	담 당 자	김규현 사무관(044-203-5632)

산업부,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공청회」 개최
- 디지털 통상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활용 -

□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공청회 겸 디지털 통상 정책 토론회』를 1.16.(수)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 (일시) 2019. 1. 16(수) 1000~1200 / (장소) 서울 무역협회 대회의실(트레이드타워 5층)

○ 이번 공청회는 '19년 상반기 시작할 예정인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전자상거래 규범 마련을 위한 협상에 앞서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것이다.

○ 동 공청회 계기에 산업부는 전반적인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입장 정립을 위해 수립한 『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방향(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론회도 실시했다.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전 산업에 걸쳐 전자상거래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혁신, 자율차·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창출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산업과 무역의 변화들을 다룰 국제적 통상규범의 정립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방향(안) 요약

1 디지털 통상의 개념 및 의의

□ (개념) 인터넷과 ICT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국가간 교역활동 전반

○ (의의) 디지털 기술 발전은 제품기획-생산-유통-고객관리-소비 전과정에 걸쳐 혁신 촉진 → GVC를 매개로 확산 → 무역에 큰 변화 초래

*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2.1조불(B2B 97%, B2C 10%)에 달하며, 우리나라는 1조불로 세계 5위 규모(연평균 성장률 21%)

- 우리 산업평균 디지털상거래 이용률은 ('06) 10.6% → ('16) 22.9%로 2배 증가, 금융·보험업 38%, 운수업 33.5%, 제조업 19.6% 등으로 이용 활발

- 무역차원에서 디지털화는 ① 비용절감('15%▼, '96~'14) ② 비교우위 변화(노동·기술·자본→데이터 처리기술) ③ 무역패턴 변화로 나타남

* 무역 대상이 기존 상품 → 데이터('14~'21년 간 데이터 증가 예상)·서비스로 절차 이동

<변화되는 무역패턴 예시>

① 기존에 없던 데이터 교역	② IT 하드웨어→데이터 서비스	③ 디지털 제품→스트리밍 서비스
3D 모델링 파일을 전송받아 3D프린터로 출력	컴퓨터 서버 판매 → 클라우드 서비스 판매	필름CD → 인터넷에서 스트리밍 감상

2 기회와 도전과제

□ (기회) 디지털 인프라·서비스 접근비용이 저렴해지면서 중소·중견기업 및 개도국들의 교역 참여기회가 확대(Easy to scale up)

* '16년 기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의 절반 이상을 중소기업이 차지(57%)

○ 교육·회계·진료 등 기존 비교역재로 인식되던 서비스가 디지털화 되어 국경간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무역을 통한 미래 먹거리 다양화

* 서비스무역 비중(WTO) : ('16) 21% → ('30) 25%(디지털기술 영향 반영시)

< 디지털 통상 정책 방향 발표 >

정책효과 파급력 및 영향력

▨ 디지털 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 확대

- 중소기업의 경우 빈번한 디지털 상거래 거래정보의 일괄 처리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이를 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국경 간 디지털 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도 급증
- 향후 중소기업과 소비자에 초점을 맞춘 정부정책의 강화 및 확대를 예상

▨ 디지털 상거래 확대를 위한 국가 간 협력 강화

- 통관절차, 소비자 보호 등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한 이슈들이 식별되며 특히 중국과 일본과의 협력은 중소기업 및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

- 한중일 FTA 협상을 통해 디지털 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연구내용	정책적 기여도 달성 정도와 우수성
디지털 상거래와 무역 및 고용에 대한 실증 분석	디지털 상거래와 무역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 결과 제시 • 2015년 이후 디지털 상거래를 활용한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수출 품목은 소비재로 나타나는 가운데 수출가격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한국의 디지털집중도와 상품수출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디지털집중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전체수출금액과 수출상품 수 및 상품당 평균수출금액이 모두 높아 디지털 상거래의 활성화와 수출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실증함. 디지털 상거래와 고용 간의 관계를 산업 및 기업 수준으로 나누어 실증분석 실시 • (산업 수준) 제조업에서 디지털집중도와 순 고용증가율, 고용창출, 고용파괴 간 평균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서비스업에서 디지털집중도와 순 고용증가율 및 고용창출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밝힘. • (기업 수준) 제조업에서 고용효과가 가장 크고, 농업과 광업에서는 실질적 효과가 발견되지 않으며, 서비스업에서는 임시직의 고용과 임금에 긍정적일 수 있음을 보임.
실증분석 결과에 근거한 시사점 제시	디지털 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도출 중소기업 디지털 상거래 정부지원정책 강화, 통관절차 개선, 소비자 보호 강화, 노동시장 제도 정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 강조 등이 필요하다는 결과 도출

07

아시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과 협력방안: 중국, 인도,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조충제/정재완·송영철·오종혁

연구목적과 기대효과

| 연구목적 |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 인도, 싱가포르의 4차 산업혁명 추진역량과 각국의 전략, 계획, 국제협력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개발 및 이들 국가와의 관련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과 협력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함.**

- 우리 정부도 2016년 제조업 혁신 3.0,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선정, 2017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신정부 경제정책 방향,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출범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음.

| 기대효과 |

▨ **우리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이들 국가와의 관련 분야 협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및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제시**

- 신흥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전략 및 계획, 핵심 사업 등의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 관련 시장 규모 및 특징 등을 분석함으로써 협력사업 개발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

정책대안 제시

▨ **중국과는 경쟁 및 대응과 함께 선택적·전략적 협력을 강화**

> 미국과 같이 시장 리더의 위치에 있는 중국은 시장 도전자를 공격하며 시장을 계속 확대하고 영향력을 높일 것이다. 플랫폼을 선도하고 표준을 장악하려 할 것이다. R&D는 물론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투자를 더욱 증가할 것이고, 정부의 육성정책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민관산학 혁신 창업 생태계 역시 계속 발전시킬 것이다. 이런 중국을 대상으로 전면적 경쟁은 물론 전면적 협력을 전개하는 것은 시장 도전자로서 합리적인 전략이 아니다. 선택적이며 전략적 협력이 현실적이다.

- 신기술·신산업 원천 기술 부문 R&D를 더욱 강화하고 개발 속도를 높여 조기 상품화 및 표준화에 주력
- 중국의 디지털화된 소비자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개발하는 동시에 국내 디지털 소비자 보호 및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
- 중국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 추진으로 수요가 급증할 5G, 스마트제조, 로봇 관련 분야 중국 진출을 더욱 적극 도모할 필요

정부는 중국 등의 기술개발 동향 및 추격 사항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관련 정책 및 대책 개발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민간에 적극 홍보하여 민간이 스스로 판단하되 그 비용과 위험을 줄여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양국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R&D를 적극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문제 등은 양국이 공동 R&D를 추진할 수 있는 좋은 분야가 될 것이다.

2018년부터 본격화될 양국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 강점을 가진 서비스 및 서비스융합 분야에 대한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 소비자 및 개인정보 보호, 중국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 및 차별대우 방지, 그에 따른 손실구제 및 분쟁해결 등을 FTA 후속협상 및 공동위원회는 물론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 협정, APEC 개인정보보호 규정(CBPR: Cross-Border Privacy Rules) 등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적극 조치해나가야 할 것이다.

- 혁신창업 생태계의 국제화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아울러 기술탈취 방지 및 기술보호 협정 등도 선제적으로 정비

혁신창업 생태계의 국제화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거대시장을 겨냥한 국내 혁신창업 기업들의 중국 진출은 물론 중국의 혁신창업 기업들의 국내 유치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양국 혁신창업 기업 간 합작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 정부 및 공공기관의 혁신창업 지원 시스템 및 모험자본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인도와는 전방위적 융합 및 상생협력을 강화

4차 산업혁명 시대 인도와의 융합·상생 협력은 양국 기업 및 민간이 주도해야 하지만, 이를 강화하기 위한 양국 정부 간 노력이 병행될 때, 그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기존에 마련된 양국 정부 간 협력 채널을 우선 점검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부합하는 채널로 개선하는 한편,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성공 사례를 조기에 만들어 이를 적극 확산하는 식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인도의 우수한 SW, IT서비스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세계 최고수준 대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인공지능, 임베디드, 클라우드 컴퓨팅 등 핵심SW 기술력을 조기에 강화
- 세계 최대 규모의 디지털개인인증시스템인 아드하르 등 인도의 빅데이터 및 관련 플랫폼을 적극 활용
- 우리나라의 풍부한 신도시 개발 경험과 앞선 스마트시티 건설 및 운영 경험을 살려 인도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
- 인도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적극 지원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속가능한 글로벌 가치사슬체계(GVC)를 인도와 구축해 나갈 필요
- 양국이 설치하기로 합의한 '한·인도 미래전략비전그룹'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한·인도 혁신창업 펀드 등도 조성할 필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많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지만 지난 2010년 인도와의 FTA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하면서 유일하게 독립전문가(independent professionals)의 상호이동에 합의했다. 163개 전문분야 중 약 90개 분야가 SW 및 IT 전문분야이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보다 적극 활용하고 특히 중소·벤처 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 인도 IT인력의 국내 유인 대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도 제조업의 스마트화, 스마트공장 사업도 장기적으로 인도와 적극 협력할 부문이다. 중국의 제조 역량은 우리나라에 이미 위협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인도의 경우 그 역량 차이가 커서 우리와는 보완적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가치 부문이나 과잉 생산능력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제조 부문을 인도로 적극 이전하는 동시에 인도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속가능한 글로벌 가치사슬체계(GVC)를 인도와 구축해 나가야 한다.

2017년 9월 산업통상부와 인도의 상공부 간 설치하기로 합의한 '한·인도 공동 미래전략비전그룹'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인도가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대표 프로젝트인 CoE-IoT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인도의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에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인도의 혁신 R&D 거점 및 혁신창업 생태계와 어떻게 협력할지 등의 정책과제를 효율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 싱가포르와는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제도, 교육 및 R&D, 창업생태계 등에서의 혁신협력을 강화

- 2025년 세계 최초 및 최고의 스마트 국가 건설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전략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제도 및 정책, 시스템을 적극 연구하고 활용
- 싱가포르 국가연구재단(NRF), 과학기술연구청(A*STAR), 14개 테스트베드 등과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할 필요

- 지속가능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싱가포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핀테크, 스마트시티 관련 혁신창업 기업들의 양국간 협력을 정부 차원에서 우선 지원할 필요

싱가포르는 세계 최고수준의 디지털인프라 및 법제도를 갖고 있으며, 가장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4차 산업혁명 전략 및 정책을 이미 운영하고 있다. ICT 인프라는 물론 싱가포르의 ICT 제도 및 법, 유연 및 혁신 역량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이런 역량은 중국, 인도는 물론 우리나라와 비교해도 훨씬 높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비전도 싱가포르 모델이 가장 적합해 보인다.

싱가포르의 우수 과학기술 인재유치 프로그램, 실용지향의 유능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POLY-GOES-UAS 등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물론 혁신창업 기업이 당장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양국 정부 간 협력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양국 전용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 전역에서 개발 추진 중인 14개 테스트베드와도 장기적 협력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테스트베드 사업에서도 자국 민간 기업 및 스타트업은 물론 다국적기업 및 스타트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율주행차 부문은 핀란드와 함께 싱가포르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완전 운행을 이미 허용한 상태다. 민간기업, 혁신창업 기업의 자발적인 진출 및 활용이 우선이지만 이 역시 수요가 많은 부문을 중심으로 정부 간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우리 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Smart Nation Initiative, 싱가포르가 프랑스 다쏘시스템과 공동으로 글로벌 스마트시티 플랫폼으로 개발하고 있는 Virtual Singapore 프로그램 등은 우리 정부나 서울과 같은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연구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부문이다. 또한 싱가포르가 중점을 두고 있는 Mobility 2030, 스마트홈 솔루션, Health hub 등은 우리나라의 12대 미래 신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높다. 이러한 부문에서도 양국간 공동 R&D는 물론 양국 민간기업 간 R&D, 혁신창업 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에 정부는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대안의 정책화 과정

▨ 印, 세계 최대 디지털 개인인증 플랫폼 가동 4차 산업혁명 가속화 ··· 한국 ICT엔 기회의 땅(2018. 6. 25.)

- KIEP 조충제 연구위원은 Chindia Plus 저널 7~8월호 기고를 통해 한국과 인도의 ICT 분야 융합·상생 협력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제시

▨ 신남방정책 구현을 위한 한·인도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2018. 7. 4.)

- KIEP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수탁과제 수행을 통해 한·인도 신기술·신산업 융합협력 확대를 위한 한·인도 미래전략비전그룹 활용을 제언
- 한·인도 미래전략비전그룹 활용을 통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SW, 스마트시티 등 양국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융합 및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제시
- 공동연구진: KIEP 조충제 연구위원(연구책임자), KIEP 송영철 전문연구원, KIEP 이정미 전문연구원, KIEP 김도연 전문연구원, KIEP 박나연 전문연구원, KIEP 윤지현 연구원

▨ 서로 맞닿은 신남방정책과 신동방정책(2018. 7. 9.)

- KIEP 조충제 연구위원은 한겨레신문 커버스토리 기고를 통해 일본의 對인도 스마트시티, 사물인터넷(IoT) 협력 현황을 소개하며 한국의 對인도 4차 산업혁명 관련 협력 강화를 주문

▨ 인도의 도시화 전망과 도시개발 분야 협력방안(2018. 8. 16.)

- KIEP 조충제 연구위원은 LH 해외개발 Preview 창간호 기고를 통해 한·인도 스마트시티 협력을 위한 정책 과제(△한·인도 도시개발 협력 위원회, △금융패키지 조기 집행을 위한 TF 구성 및 조기 추진, △한국형 제조업 중심 신도시 개발사업 적극 개발 및 추진)를 제시

▨ KIEP 중국 지역별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과 한·중 협력 세미나(2018. 10. 30.)

- KIEP는 중국 주요지역의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 산업인터넷, 빅데이터 분야의 발전 현황과 구체적인 응용사례를 논의하고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함.
- 주요 참석자: KIEP 양평섭 선임연구위원, 산업연구원 김상훈 연구위원, 중국사회과학원 허쥔 주임, 베이징 화샤공업인터넷 스마트기술연구원 왕시원 원장, 중국 알리클라우드 연구센터 양쥔 전략디렉터, 상하이사회과학원 장위안위안 부주임

대안의 정책화 실적

▨ 한·인도 스타트업 계약체결식(2018. 7. 9.)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한 한·인도 스타트업 계약체결식에서 수출, 투자, 공동연구 계약 등 총 5건의 계약이 체결되었고 총 계약 금액은 약 200만 달러에 달하였음.

- 주요 참석자: 중기부 홍종학 장관,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상직 이사장, 김광현 창업진흥원장
- 중기부는 성공가능성이 높은 인도 스타트업 시장에 우수한 국내 스타트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인도에 양국 스타트업들이 자유롭게 교류·협력할 수 있는 '코리아 스타트업 타운'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힘.
- 보고서 p.246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앞선 제조 및 상용화 기술과 인도의 상대적 강점인 기초과학 및 SW 역량을 잘 융합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지속가능한 글로벌 가치사슬체계(GVC)를 인도와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

▨ 한·싱가포르 양해각서 3건 서명(2018. 7. 12.)

- 산업부는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① 한·싱 4차산업혁명 기술협력, ②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질서 구축 협력, ③ 스마트그리드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
- 주요 참석자: 문재인 대통령, 리셴룽 총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 보고서 pp.248-249에서 한국정부는 경제 모든 분야의 스마트 솔루션을 촉진하는 싱가포르와 공동 R&D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 제1회 디지털 경제 및 디지털 실크로드 국제 컨퍼런스(2018.9.18.)

- 기획재정부는 고위급 협의체를 통해 디지털 경제 육성, 4차 산업혁명 촉진, 디지털 실크로드 구축에 관한 대화를 진행해 나갈 것을 중국에 제안
- 주요 참석자: 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고위 관계자, 저장(浙江)성 부시장
- 보고서 p.8에서 중국의 디지털화된 소비자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개발하고 중국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 추진으로 수요가 급증할 5G, 스마트제조, 로봇 관련 분야 중국 진출을 더욱 적극 도모해야 함을 주장

▨ 제3차 한·인도 CEPA 공동위원회(2017. 9. 25.)

- 한·인도는 인도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산업인프라 및 대량생산능력을 결합한 4차 산업혁명 주도 신산업 분야 발굴 협력에 합의
- 주요 참석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인도 수레시 프라부 상공부 장관
- 보고서 p.8에서 인도의 우수한 SW, IT 서비스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핵심 SW 기술력을 조기에 강화하는 등 인도와 전방위적 융합 및 상생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

▨ 2018 한·중 이노베이션 플라자(2018. 11. 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OTRA는 북경에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의 중국 진출과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2018 한·중 이노베이션 플라자를 개최
- 주요 참석자: 박한진 KOTRA 중국지역본부장, 레전드캐피탈 신창훈 투자부총재, 화동미디어 강민구 대표, 리우보 투스타(TusStar) 총경리 VC, JD 캐피털 장웨이팡 투자총감
- 과기정통부와 KOTRA는 중국이 한국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최대 시장이며 한·중

융복합 협력을 통해 반도체에 이어 혁신기술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확대 모멘텀 모색의 필요성 강조

- 보고서 p.237에서 양국간 공동 R&D의 적극 추진, 보고서 p. 240에서 중국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 추진으로 수요가 급증할 혁신기술 분야의 중국 진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지원해야 함을 제안

▨ 한·인도 국제공동R&D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2018. 11. 30.)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인도 과학기술부의 산하기관인 글로벌혁신기술연맹(GITA)은 인도 뉴델리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스마트팩토리, 전기차, 로보틱스·자동화 등 첨단제조 분야의 한·인도 공동 R&D를 본격 추진
- 주요 참석자: KIAT 김종주 혁신성장본부장, GITA 라티카 제인 최고경영자
- 본 MOU는 2018년 7월 4차 산업혁명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가 체결한 한·인도 공동 미래비전전략그룹 MOU의 후속조치이며 4대 분야(△첨단 제조, △에너지, △헬스케어, △디지털 전환)에서 실질적 협력사업을 발굴함.
- 보고서 pp.246-247에서 한·인도 공동 미래전략비전그룹의 적극 활용을 포함하여 기존의 양국 정부 간 협력 채널을 우선 점검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을 제안

▨ 중국 투자자 라운드테이블(2018. 12. 4.)

- 산업통상자원부는 북경에서 한국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국 투자자들을 초빙하여 로봇·신재생·콘텐츠 등 10개 선도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자 라운드테이블을 개최
- 주요 참석자: 산업부 이호준 투자정책관, 산업용로봇·이차전지(SIASUNROBOT, Yoku), 신재생에너지(레네솔라), 콘텐츠·소비재·정보통신기술(알파그룹, 유미도, 광저우쩐다), 부동산·재무투자(모던랜드, 푸스투자, 동정캐피탈) 등 총 10개 기업 관계자
- 산업부는 유망신산업분야에서의 양국 기업 간 합작투자업체 설립이 실질적인 협력방안이 될 것이며 유망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기술력 있는 한국기업과 한국과의 기술 제휴를 바라는 중국기업 간 연결을 지원할 것임을 강조
- 보고서 p.240에서 양국 혁신창업 기업 간 합작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양국 정부 및 공공기관의 혁신창업 지원 시스템 협력을 강화해야 함을 제안

▨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9차 회의(2018. 12. 10.)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헬스케어 발전전략으로 개방형 실험실 구축, R&D 인력 양성 등을 통한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을 결의함.
- 주요 참석자: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 과기정통부장관, 산업부장관, 고용부장관, 국토부장관, 중기부장관, 과학기술보좌관
- 보고서 p. 7에서 정책 시사점으로 혁신 R&D 및 클러스터 투자, 테스트베드 구축을 제시

▨ 인도 내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설치 MOU 체결(2019. 2. 22.)

- 양국은 한국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설치 MOU를 체결
- 본 MOU는 양국 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모디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중소기업벤처부와 인도정부간 서명식 개최
- 주요 참석자: 문재인 대통령, 모디 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랑가나탄 주한 인도대사

< 인도 내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설립 MOU 체결 >

▨ 한국-인도 공동펀딩형 R&D프로그램 실시(2019. 2. 24.)

-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와의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펀딩형 R&D 프로그램을 개시한다고 발표
- 본 조치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방문 후속조치로 인도와의 상생번영과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을 위한 경제협력의 일환임.
- 양국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등 첨단 제조 4개 분야를 선정해 과제당 총 2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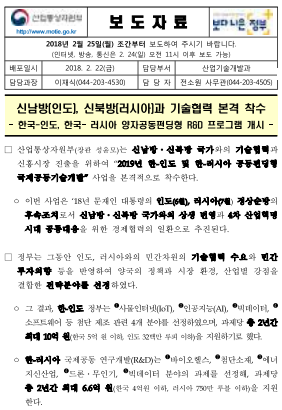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보다 나은 정부

2018년 2월 25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2. 24일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2. 22(금)	담당부서	산업기술개발과
담당과장	이재식(044-203-4530)	담 당 자	전소원 사무관(044-203-4505)

신남방(인도), 신북방(러시아)과 기술협력 본격 착수
- 한국-인도, 한국- 러시아 양자공동펀딩형 R&D 프로그램 개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신남방·신북방 국가**와의 **기술협력**과 신흥시장 진출을 위하여 **"2019년 한-인도 및 한-러시아 공동펀딩형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 이번 사업은 '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6월), 러시아(7월) 정상순방**의 **후속조치**로서 **신남방·신북방 국가와의 상생 번영**과 **4차 산업혁명 시대 공동대응**을 위한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 정부는 그동안 인도, 러시아와의 민간차원의 **기술협력 수요**와 **민간 투자의향** 등을 반영하여 양국의 정책과 시장 환경, 산업별 강점을 결합한 **전략분야를 선정**하였다.

○ 그 결과, **한-인도** 정부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등 첨단 제조 관련 4개 분야를 선정하였으며, 과제당 **총 2년간 최대 10억 원**(한국 5억 원 이하, 인도 32억만 루피 이하)을 지원하기로 했다.

○ **한-러시아** 국제공동 연구개발(R&D)는 ●바이오헬스, ●첨단소재, ●에너지신산업, ●드론·무인기, ●빅데이터 분야의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총 2년간 최대 6.6억 원**(한국 4억원 이하, 러시아 750만 루블 이하)을 지원한다.

-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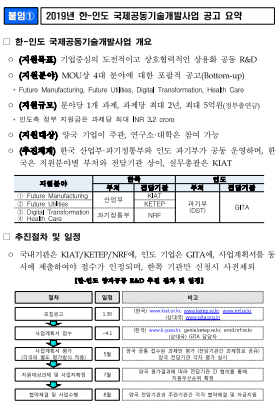

붙임1 2019년 한-인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요약

□ **한-인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개요**

○ **(지원목표)** 기업중심의 도전적이고 상호협력적인 상용화 공동 R&D

○ **(지원분야)** MOU상 4대 분야에 대한 포괄적 공고(Bottom-up)

- Future Manufacturing, Future Utilities, Digital Transformation, Health Care

○ **(지원규모)** 분야당 1개 과제, 과제당 최대 2년, 최대 5억원(정부출연금)

- 인도측 정부 지원금은 과제당 최대 INR 3.2 crore

○ **(지원대상)** 양국 기업이 주관, 연구소·대학은 참여 가능

○ **(추진체계)** 한국 산업부-과기정통부와 인도 과기부가 공동 운영하며, 한국은 지원분야별 부처와 전담기관 상이, 실무총괄은 KIAT

지원분야	한국		인도	
	부처	전담기관	부처	전담기관
① Future Manufacturing	산업부	KIAT	과기부 (DST)	GITA
② Future Utilities		KETEP		
③ Digital Transformation	과기정통부	NRF		
④ Health Care				

□ **추진절차 및 일정**

○ 국내기관은 KIAT/KETEP/NRF에, 인도 기업은 GITA에, 사업계획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접수가 인정되며, 한쪽 기관만 신청시 사전제외

[한-인도 국제공동 R&D 추진 절차 및 일정]

절차	일정	비고
모집공고	1.30	(한국) www.kiat.or.kr, www.ketep.or.kr, www.nrf.re.kr (인도) www.gita-india.com
사업계획서 접수	~4.1	(한국) www.k-paint.kr, gemaksep.or.kr, end.or.kr (인도) GITA 홈페지
부처협의 및 한국 (각각의 협의 방식에 의함)	5일	양국 공동 접수된 과제의 경우 (한국)부처 간 (인도)기관 간의 협의 필요
지원적합성 및 사업계획	7일	양국 협의결과에 따라 한국기관 간 협의를 통해 지원적합성여부, 계획...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8일	양국 전담기관과 주관기관간 각각 협약체결 및 착공지원

- 3 -

< 한국-인도 공동펀딩형 R&D 프로그램 개시 합의 >

정책효과 파급력 및 영향력

▨ 중국, 인도, 싱가포르 모두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강점을 가지고 있어 이들 국가와의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통한 시너지효과 기대

연구내용	정책적 기여도 달성 정도와 우수성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역량	이들 국가들이 현재의 예상대로 향후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주요 신흥국이 될 수 있는지를 분석 • 중국과 인도가 AI 성숙도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 • 싱가포르는 4차 산업혁명에 잘 대응할 국가에서 2위(USB, 2016.1), 4차 산업혁명에서 두각을 나타낼 국가 1위
국가별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및 특징 분석	신흥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전략 및 계획, 핵심 사업 등의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 관련 시장 규모 및 특징 등을 분석 • 인도와 중국은 IoT분야를 중점개발 분야로 선정하고, 각각 장점이 있는 서비스(SW)와 제조업(HW)을 기반으로 제조업의 서비스화와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우선 추진 • 싱가포르의 경우, 인도 및 중국보다 발달되고 확산되어 있는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IoT, CPS(Cyber Physical System, 가상물리시스템),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를 동시에 개발하여 국가 전체를 스마트화(Smart Nation)하는 전략을 추진
우리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이들 국가와의 관련 분야 협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및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제시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역량, 협력 기회 등을 평가해 국가별 협력 분야와 구체적인 과제, 정책 방향 등을 제시 • 중국 내 수요가 급증할 5G, 스마트제조, 로봇 관련 분야 중심으로 협력 강화 • 인도와는 기술협력, 스마트시티 협력 등을 추진 • 싱가포르와는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제도, 교육 및 R&D, 창업생태계 등에서의 혁신협력을 강화

08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 방안 연구

정형곤/이보람·손원주

연구목적과 기대효과

| 연구목적 |

▨ **본 연구는 기존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현재의 글로벌 경제환경과 한국경제 상황에서 외자유치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함.**

- 대규모 외투 유치 필요성, 선진국 대비 한국 신기술 현황 등을 포함하여 외자유치 필요성 분석
- 상기 분석을 통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새로운 외투유치 지원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특히 외국인투자 지원 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 등 외투유치 지원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외국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외국인투자지역 제도는 국내기업도 입주 가능한 제도로 개편 및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외촉법, 경제특구법, 조특법 등 관련법, 제도, 조직 등 정비 방안도 주요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서 제시하고자 함.

| 기대효과 |

▨ **EU 집행위원회는 한국의 국내외 기업 차별적 지원제도에 대해 한국을 유해조세 비협조국으로 지정(2017. 12. 5.)한바 이에 대응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개편해야 하는 상황**

- 본 연구는 외투지역, 경제자유구역 등 경제특구에 대한 내외국인 차별적 조세지원을 개편하여 정부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 **또한 최근 환경변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안) 제시를 통해 외국인투자유치 제도의 정비에 기여하고자 함.**

정책대안 제시

▨ **투자인센티브의 투자유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세감면 인센티브와 현금지원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현행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는 제도인 조세감면은 일정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 우리 정부의 투자유치 협상력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하겠음.
- 반면, 현금지원제도의 경우 투자유치 협상력이 크고 투자의 내용에 따라 현금지원수준을 달리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인센티브 재원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음.
- 현행 조세감면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현금지원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활용하기 위해서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조세감면제도 중심에서 현금지원제도 중심으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함.
- 다만,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투자유치제도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신인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인센티브의 효과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당분간 두 인센티브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즉, 당장 조세감면의 축소를 통한 인센티브규모의 감소만큼 현금지원규모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다면 두 제도를 투자유치 효과극대화라는 목표하에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는 인센티브 지원 대상 투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인센티브 규모를 상한선으로 하고, 그 상한선 내에서 투자자와 협상을 통하여 인센티브 규모 및 지원방식은 조세감면과 현금지원을 혼합하여 설계하는 것임.

▨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 폐지, 현금 보조금 지원 확대

세제 지원

외국인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폐지
* 외국인투자지역·신성장기술 수반기업·경제자유구역 등의 외국인투자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세감면* 및 지자체가 활용 가능한 인센티브인 지방세 감면 유지
* 중국, 러시아 등 국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 중

현금 지원

신기술 투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외투기업에 대한 현금 보조금 지원 확대
- 현금보조금 지원대상 확대(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 및 제품"수반기업 등 추가) 및 지원한도 상향
- 외투기업이 고임금 등 고용 창출 시 인센티브 우대 적용

▨ 신성장기술 수반기업: 신성장기술 투자 세액공제 확대

※ 국내외기업 차등 없이 신성장기술 투자·연구개발 촉진 강화

지원대상 확대

기업의 신성장기술 투자 확대를 위한 신성장기술 세액공제 대상 기술 및 사업화시설 확대(시행령 개정, 2019.1분기)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지원대상 신성장기술 범위와 사업화시설 종류를 확대*하여 기업의 투자 위험부담을 경감

* (예) 현황: 11개 분야, 157개 기술(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 및 관련 사업화 시설
→ 개선 : 블록체인 기반 정보보안 기술 및 사업화시설 등 추가

지원요건 완화

신성장동력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 요건* 대폭 완화

* 현황: 직전 연도 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중 요건 : 5% 이상 직전 연도 전체 R&D비용 중 신성장기술 R&D 비중 요건 : 10% 이상 등

- 창업기업의 첫해 투자 분은 직전 연도가 아닌 당해 연도 기준으로 세액공제 요건 적용 → 창업기업의 신규 투자도 세액공제 지원

* (예) '직전 연도' 매출액 대비 전체 R&D 비중 → '당해 연도' 매출액 대비 R&D 비중

▨ U턴·지방이전기업 및 지역특구: 고용 창출·낙후지역 중심 지원

※ 고용 창출 중심의 비수도권·투자소외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세제지원 연장

낙후지역, 연구개발 특구 등 각종 지역 특구* 세제지원 일몰기한을 일제 연장(2018년 말 → 2021년 말)

*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 낙후지역, 제주투자진흥지구,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기구, 금융중심지 등

고용창출 유인 강화

지역 특구의 법인·소득세 감면 한도*가 신규 고용 창출과 연계되도록 재설계

* 현행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 1천만 원(투자누계액 20% 한도)

낙후지역 지원 확대

낙후지역 내 사업시행자, 신설·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요건* 대폭 완화 및 고용요건 추가

* 현행 : 사업시행자 1,000억 원 이상 투자, 신설·창업기업 100억 원 이상 투자

U턴·지방이전기업 지원 확대

해외 → 국내, 수도권 → 지방으로의 투자인센티브 확대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지원 한도 상향(60억→100억 원) 및 신규고용 창출 시 설비투자 보조비율 상향 등 예산지원 확대

* 현행 : 신규고용 10명~50명 이상 → 설비투자 보조비율 1~5%p 가산

- 고용계획 대비 신규고용 초과 달성 시 초과분만큼 설비투자 보조금 추가 지급하는 고용 인센티브 추가 정산제도 도입

* 현행 : 고용계획 미달성시 보조금 환수 규정은 있으나, 초과 달성시 추가 지급 규정 無

* 개선 : 고용계획 초과 달성 시 초과분만큼 보조금 추가지급 규정 마련

-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비수도권 지역 동반유턴 촉진을 위해 대기업 부분 복귀 시 법인·소득세 감면 추진(3년 100%+2년 50%)

* 현재는 중소·중견기업 완전·부분복귀, 대기업 완전복귀 시에만 감면 적용

대안의 정책화 과정

▨ 산업부 투자유치과장 주재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제도 관련 협의(2018. 3. 8.)

- 산업부는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산업부의 대응 방향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
- 주요 참석자: KIEP 정형곤 선임연구위원, 산업부 김용채 투자정책과장, 산업부 하동환 사무관

▨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 관련 간담회(2018. 3. 20.)

-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제도의 현황 및 성과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
- 주요 참석자: KIEP 정형곤 선임연구위원, 서울여대 이성봉 교수, 서울시립대 전봉걸 교수

▨ KOTRA 주최 외국인투자유치 제도개편과 IK의 발전방향 좌담회(2018. 3. 20.)

- KIEP 정형곤 선임연구위원은 해외사례를 기반으로 외국인투자유치제도의 개선방안과 InvestKorea의 역할에 대해 발표
- 주요 참석자: 조세재정연구원 안종석 본부장, 산업연구원 조재한 연구위원, 숙명여대 오준석 교수

▨ 산업부 주최 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개편 관련 회의(2018. 4. 2.)

- 참석자들은 외국인투자유치 제도 개편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논의하였고 KIEP은 투자유치 관련 글로벌 트랜드와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주요 참석자: KIEP 정형곤 선임연구위원, 산업부 김용채 투자정책과장, 산업부 하동환 사무관

▨ 산업부 주최 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개편 관련 회의(2018. 4. 11.)

-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제도의 세부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 주요 참석자: KIEP 정형곤 선임연구위원, 산업부 하동환 사무관

▨ 산업부 투자정책국장 주재 연구관련 회의(2018. 5. 9.)

- 현행 국내기업 지원제도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와 기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제공
- 주요 참석자: KIEP 정형곤 선임연구위원, 산업부 이호준 투자정책국장, 산업부 김용채 투자정책과장, 산업부 하동환 사무관

▨ 투자지원제도 개편 관련 이해관계자, 지자체, 전문가 간담회(2018. 5. 23.)

- 향후 추진 가능한 투자지원제도 개편방안에 대하여 업계·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KIEP은 투자지원제도 개편 배경 및 개편 시나리오에 대해 발표.
- 주요 참석자: KIEP 정형곤 선임연구위원, 산업부 이호준 투자정책국장, 산업부 김용채 투자정책과장, 외국기업협회 이승현 회장, 서울여대 이성봉 교수, 서울시립대 전봉걸 교수, 충남·경남·인천 주요 광역지자체 외투 유치 관련 담당자

대안의 정책화 실적

▨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2018. 7. 18.)

- 김동연 부총리 주재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논의
- 투자유치 지원제도의 추진 과제로 ①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소득세 감면 폐지, 현금 지원 확대, ② 신성장기술 수반기업의 세제지원 대상 기술 범위 및 사업화시설 종류 확대, 지원요건 대폭 완화*, ③ U턴·지방이전·지역특구에 대한 고용창출 중심의 비수도권·투자소외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채택
  * 현행 조세특례법상 157개 신기술 및 80개 시설을 대상으로 세제를 지원하나 2019년 1분기까지 기술·기설 범위를 확대할 예정임.
- 보고서 p.116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폐지, 현금 보조금 지원 확대를 제안하였고 p. 117에서 신성장기술 수반기업의 신성장기술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제시하였으며 pp. 119-120에서 U턴·지방이전기업 및 지역특구를 고용 창출·낙후지역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언
- 보고서 pp.116-117과 pp.119-120에서 제시한 개편방안이 투자유치 지원제도의 추진 과제로 반영

<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 >

▨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2018. 11. 28.)

- 권칠승 의원 외 9인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 본 법률안에는 외국인투자에 한정한 법인·소득세 감면제도 폐지, 투자 세액공제 대상 기술·사업화시설 확대, 지원요건 대폭 완화, 현금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지원한도 상향, 외투기업의 양질의 신규고용 창출 우대 등의 내용 포함
- 보고서 pp.116-117과 pp.119-120에서 제시한 개편방안이 법률안에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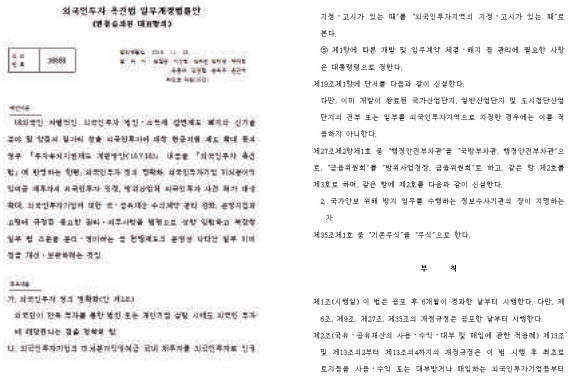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00

제안이유

대표적인 사례로서 외국인투자 개인·소득세 감면제도 폐지와 신기술 분야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제도 확대 등의 정부 「투자유치발전계획 개편방안(18.7.10)」 내용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반영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정의 명확화, 외국인투자기업 지원분야의 일몰을 폐지하여 외국인투자 정책, 핵심산업과 외국인투자 사전 허가 대상 확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감세제도 수요제기 관리 강화, 중견기업과 고용에 규정된 중요한 공리·비투자사항을 법률으로 상향 입법하고 복잡한 일부 법 조문을 분리·정비하는 등 한정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 정의 명확화(안 제2조)

외국인이 단독 투자를 통한 법인 또는 개인기업 설립 시에도 외국인 투자에 해당되는 결출 정확화 함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자(외국인투자기업 국내 투자자를 외국인투자자로 인정

지정·고시가 있는 때"를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개발 및 입주계약 체결·해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금융위원회"를 "방위사업청장,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안보 위해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제35조제1호 중 "기준주식"을 "주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9조, 제27조,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입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및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토지등을 사용·수익 또는 대부받거나 매입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등부터

<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

정책효과 파급력 및 영향력

▨ 본 연구는 투자인센티브의 투자유치 제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EU 집행위원회의 유해조세 비협조국 지정에 대응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외국인투자 유치지원 제도 개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연구내용	정책적 기여도 달성 정도와 우수성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새로운 외투 유치지원제도 개편 방안 모색, 외국인 투자유치 제도의 정비에 기여	외투지역, 경제자유구역 등 경제특구에 대한 내외국인 차별적 조세지원을 개편하여 정부정책에 기여 •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소득세 감면 폐지 • 국내외기업 차등없는 신성장기술 투자·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투자 세액공제 확대 투자인센티브의 투자유치 효과 제고를 위한 현행 조세감면 인센티브, 현금지원제도의 통합 운영방안 제시 • 신기술 투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외투기업에 현금 보조금 지원 확대 • 고용 창출을 중심으로 비수도권·투자소외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09

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정책 효과성 연구

이수영/최혜린·김혁황·박민숙·남시훈

연구목적과 기대효과

| 연구목적 |

▨ **최근 미국, EU, 대만 등을 중심으로 리쇼어링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리쇼어링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바, 리쇼어링의 배경과 가능성 및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 시사점을 제시**

- 리쇼어링의 학문적 정의 및 경제적 배경과 정책적 배경 검토
- 기업 데이터와 이론모형 분석을 통해 리쇼어링 가능성 및 리쇼어링 정책 효과성 분석
- 한국, 미국, 유럽, 대만의 리쇼어링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 도출

| 기대효과 |

▨ **우리나라 유턴지원정책에 대한 효과성 제고 및 정책 방향 제시**

- 이론모형을 통해 리쇼어링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해외의 리쇼어링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현 유턴지원정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

정책대안 제시

▨ **전수조사를 통한 리쇼어링 수요조사 실시**

- 대만의 경우 중국에 진출한 자국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정책을 수립한 바, 우리도 전수조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하는 정책수요를 파악할 필요

기존의 우리나라 리쇼어링 정책은 투자유치 정책과 유사한 방식으로 중소기업 복귀에 초점을 두어 설계되었지만, 기업의 호응이 적은 것을 볼 때 해외진출 기업의 수요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해외에 진출한 좋은 기업이 국내복귀를 하고자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 리쇼어링 개념의 확대

-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및 축소하고 국내투자를 했을 경우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직접적인 투자를 수반하지 않더라도 국내 아웃소싱을 통해 국내 생산을 증진시킬 때 국내 생산 및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

우리나라의 유턴기업은 해외사업장 축소나 국내사업장 확대 등 투자의 축소와 확대가 수반되기 때문에 아웃소싱의 형태로 해외생산을 하다가 국내로 복귀한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웃소싱을 통해서도 국내생산이 확대된 경우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턴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책을 펼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맞춤형 리쇼어링 정책 시행

- 국내 R&D, 신소재 및 혁신 기술, 자동화 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R&D 투자에 적합한 환경을 마련할 때 고부가가치 기업의 리쇼어링 촉진 가능
-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점으로 유턴을 지원한 대만의 예를 참조하여 리쇼어링 시 연구개발을 지원하거나 독일처럼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 제공 가능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주로 전기 장비, 통신 설비 및 자동차 산업 등 첨단 기술 산업에서 리쇼어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첨단 기술 및 풍부한 고숙련 노동자가 기업을 유치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리쇼어링을 장려할 수 있다.
리쇼어링은 기술집약산업 이외에도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 의류, 신발 및 주얼리 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찍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어려울 만큼 유행의 변화가 더욱 빨라졌다는 것이다. 각 고객의 수요에 맞춘 소량생산이 늘어나고 판매 이후에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따라서 수요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국내생산을 늘리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생산위치별 비용정보 제공 및 공급망 연결지원

- 영국과 같이 리쇼어링 기업의 국내 공급망 형성을 도와줄 수 있음.

기업들의 효과적인 생산위치 결정을 위하여 미국의 '전지역비용산정' 툴(tool)과 같은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도 효과적인 리쇼어링 정책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투자를 시행하거나 아웃소싱 계약을 맺기 전에 비용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정보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대안의 정책화 과정

▨ 산업통상자원부 실무담당자 미팅 참석(2018. 6. 22., 산업부)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송현주 과장, 해외투자과 윤제민 서기관 등과 연구 결과 논의
- 현재 유턴기업지원법의 범위가 협소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지원법과 차별이 있는 점에 대해 공감
- 참석자: KIEP 이수영 부연구위원, 최혜린 부연구위원, 김혁황 선임연구원 등

▨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해외직접투자 전문가 간담회 참석(2018. 7. 5., KOTRA)

- 해외직접투자 주요 동향 공유 및 해외직접투자의 영향과 경제적 효과 논의
- 참석자: KIEP 최혜린 부연구위원, 산업부 투자정책국장, 산업연구원과 수출입은행 및 KOTRA 투자지원실 관계자 등

▨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유턴기업 제도개편 관련 간담회 참석(2018. 11. 8., 서울 광해관리공단)

-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 및 제도개선방안 논의
- 참석자: KIEP 김혁황 선임연구원, 산업부 투자정책관, KOTRA 해외투자팀장, 유턴기업 관계자, 관련 전문가

대안의 정책화 실적

▨ 정부의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에 본 연구의 제안 내용이 반영(2018. 11. 29.)

-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018. 11. 29.)에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을 발표
- 동 대책의 주요 골자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유턴기업 인정범위 확대”임. (기존)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하던 ‘제조’사업장을 50% 이상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해외 생산제품과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증설하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 포함 ⇒ 해외 사업장 축소 요건 완화: 생산량을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 ⇒ 유턴기업 생산제품 범위 확대: 생산품목을 일부 변동하여 복귀하는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유턴기업 대상업종 확대: 기존에는 제조업만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지식서비스업도 지원
-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제도가 개편되면서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인센티브 체제로 질적 보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등 정부의 정책사업에 유턴기업 참여 우대 등
- 그 외 원스톱 지원데스크 구축, 해외진출기업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등이 포함; 향후 유턴 수요발굴과 제도개편 홍보 등 유치활동에 활용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보다나은 정부

2018년 11월 29일(목) 11: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8. 11. 29.(목)	담당부서	해외투자과
담당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최우혁 과장(044-203-4090)	담 당 자	최원엽 사무관(044-203-4091)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김성규 팀장(044-200-2221)		김서웅 전문위원(044-200-2220)
	기획재정부 산업정보예산과 이상영 과장(044-215-7310)		이정윤 사무관(044-215-7311)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 박준호 과장(044-215-7230)		한주희 사무관(044-215-723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조만희 과장(044-215-4130)		권오현 사무관(044-215-4133)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 장도환 과장(044-215-7630)		심수현 사무관(044-215-7632)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김종범 과장(02-2100-3528)		오영곤 사무관(02-2100-3585)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김부희 과장(044-202-7210)		이지은 사무관(044-202-7213)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이순배 과장(042-481-4545)		윤성웅 사무관(042-481-4382)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김우순 과장(042-481-4431)		박지환 사무관(042-481-4437)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손주형 과장(02-2100-2860)		이한샘 사무관(02-2100-2861)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발표

- 유턴기업 인정 범위를 넓혀 지원대상 확대 -

- 국내복귀 현장에서 마주치는 애로 해소 및 인센티브 보강 -

- 원스톱 지원데스크 구축(코트라)으로 지원절차와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

"연내 유턴법 개정안 발의"로 속도감 있는 지원 추진

□ 정부는 11.29(목)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이하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책효과 파급력 및 영향력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유턴기업의 범위확대,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고부가가치 기업의 리쇼어링 지원 등은 유턴기업지원법 개정안에 일부 반영**

연구내용	정책적 기여도 달성 정도와 우수성
리쇼어링을 명확히 정의하고 리쇼어링 현상이 문헌상에서 갖는 의미 정리	문헌의 리쇼어링 정의 및 배경 파악 • 국내 및 해외, 인소싱 및 아웃소싱 여부에 따라 네 종류로 구분 • 리쇼어링은 비용절감, 품질 개선 등의 경제적 이유로 이루어짐. • 이외에도 리쇼어링은 제조업 강화,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적 이유로 장려
한국 기업의 리쇼어링 현황 및 가능성 파악	기업별 중간재 조달 통계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리쇼어링 가능성 파악 • 기업활동조사의 원자료 구입액 통계를 활용해 리쇼어링 가능성을 살펴본 결과, 2013년 이후 리쇼어링의 가능성이 발견 • 예상되는 리쇼어링 주요 유형은 해외 아웃소싱을 국내 아웃소싱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판단
기업의 리쇼어링 결정에 관한 이론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효과성 분석	기존 모델을 확장하여 리쇼어링의 정책효과성 분석 • 정책적 지원으로 리쇼어링의 비용을 줄어주면 리쇼어링이 증가하는 동시에 오프쇼어링의 기대비용을 낮춰주기 때문에 오프쇼어링도 함께 증가
국내 및 해외 리쇼어링 현황과 제도에 관해 문헌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관련 제도에 대한 정책 시사점 도출	문헌 및 현지조사를 통해 국내 및 미국, 유럽, 대만의 리쇼어링 현황과 정책 분석 • 한국의 경우 복귀의사가 있더라도 실제 국내 복귀로 이어지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미국 및 유럽의 경우 기술집약적 산업 및 고객 수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의류 및 신발 산업 등을 중심으로 리쇼어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리쇼어링이 오프쇼어링을 대체하는 현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 대만은 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의 수요를 파악하고 지원 정책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특히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 활발히 지원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